


The Beauty of HOLINESS

A SPIRIT-FILLED LIFE. A HOLY CALLING.

글로벌 감리교회 2026년 총회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일일 저널

Sandton Convention Centre, Johannesburg

목차

변경 및 정정	2
본회의 회의록	3
한국 감리교회와 함께하는 언약	6
심의를 위한 청원	7

KUDO



본회의

변경 및 정정

오늘의 일정은 이 판에 포함되지 않았다; 편집 당시 수요일 일정은 접수되지 않았다.

심의를 위한 청원에 대한 정정

어제의 일일 저널에 보고된 세 건의 청원이 아래와 같이 정정된다.

청원 1093 — 연대상소협의회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보고서 442쪽)

- 개별 심의 항목으로, 원안 지지로 인쇄되었으며, 표결은 찬성 10 / 반대 2 / 기권 1이었다. 그 표결은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입법 위원회의 조치가 아니다. 청원은 여전히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위원회가 조치했을 때 보고될 것이다.

청원 1331 — 포도주스 요구 없이 포도주를 제공할 지역 권한 (보고서 45쪽)

- 합의된 회의순 DS-2A — 지지된 청원에 인쇄되었다. 교리와 성례 입법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일괄동의안에서 삭제되었으며 개별 심의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 위원회 조치는 변경되지 않았다: 수정안 지지, 찬성 50 / 반대 1 / 기권 1.

청원 1108 —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제도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보고서 526쪽)

- 합의된 회의순 CCOF-2A — 지지된 청원에, 원안 지지로 인쇄되었으며 표결은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이었다. 해당 일괄동의안에서 삭제되었다. 입법 위원회는 이후 청원을 수정하고 재채택했으며, 오늘의 심의를 위한 청원 중 합의된 회의순 CCOF-3A에 실려 있다.

회부

- 청원 1172 (168쪽)는 지역 교회 입법 위원회에서 헌법, 연대 조직, 재정 입법 위원회로 회부된다.
- 청원 1264 (525쪽)는 헌법, 연대 조직, 재정 입법 위원회에서 목회 입법 위원회로 회부된다.
- 청원 1456 (335쪽)는 감리직 입법 위원회에서 연회 입법 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 문안 정정

- 청원 1473 (사회적 증언): 청원 보충자료에 출판된 대로 그 제목 아래에 “성적 죄에 관한 구체성을 위한 청원”으로 인쇄되었다. 위원회의 파일에는 청원 1472의 제목이 붙어 있다.
- 청원 1111 (사회적 증언): 위원회가 채택한 문안은 “all humna life”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all human life”로 인쇄되었다.

본회의 회의록

2026년 9월 1일 화요일

본회의에 앞서, 회의는 예배를 위해 모였다. 다이앤 유리 목사가 이사야 6:1-8을 본문으로 “거룩함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심시킨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케네스 레빙스턴 감독은 오전 11:00에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으며, 총회에서 처음으로 의장을 맡았다. 그는 Robert's Rules of Order가 자신의 마음의 언어가 아니라고 말하고,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의 변명들과 아론이 그를 위해 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상기시키며, 회기에서 필요할 때 정보를 구하기 위해 돌아서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문제에 자존심이 없다.”

의사일정 위원회 의장인 노마 모리슨(Upper Midwest)이 당일 의사일정을 제시했다. 그것은 연대 협의회 보고, ¶ 802.2에서 요구하는 연대 위원단들의 계속 여부에 대한 표결,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절차 사항 및 입법을 규정했다; 오후 12:30 점심식사 후, 그날 남은 시간에는 입법 위원회가 열리며; 위원회 조치는 오후 6:00까지 완료하거나 제출되어야 하고; 업무를 마치지 못한 위원회들은 오후 7:30부터 9:30까지, 또는 그들이 정하는 시간까지 다시 모인다. 모리슨은 저녁식사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일 의사일정은 거수로 승인되었다.

연대 협의회 의장인 제시카 라그론 목사(Trinity)가 글로벌 감리교회 첫 연대 협의회 보고를 제시했다. 그녀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많은 지체를 가진 몸에 관한 보고의 틀을 세우면서, 지역 교회를 몸의 살아 있는 세포로, 협의회들과 위원단들을 그곳에 영양을 전달하는 체계로 설명했고, 에스겔 37장을 인용하여 몸이 완전히 조립되었어도 성령의 숨결 없이는 여전히 생명이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협의회가 코스타리카 창립 총회 이후 격주로 회의를 왔으며; 교회의 연대 구조를 수립하고, 인력 배치 및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며, 연회 위원단과 함께 각 새 연회와 신흥 지역을 승인하고,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제도 위원단과 함께 총회 예산을 감독하며, 총회 위원단과 함께 이번 총회를 준비했고; 협의회 의장들이 매월 온라인으로 그녀 및 연대 운영 책임자 마이크 셰이퍼와 회의했으며, 감독회, 협의회 및 위원단 의장들도 한 차례 대면 회의를 했다고 보고했다.

테시아 맬러리 박사 목사가 이끄는 글로벌 전례 태스크 포스를 보고하면서, 라그론은 집필팀이 1년 전 목회자들과 교회에 가장 필요한 전례들을 식별하는 일로 시작했으며, 초안들은 목회자들, 실무자들 및 회중의 글로벌 협의를 통해 검토되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이번 총회 예배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전례 초안들은 2026년 10월 1일 교회의 모든 공식 언어로 공개될 것이다, 이후 3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시작되며, 최종 편집은 1월에 시작되고 출판은 2027년에 예상된다.

실시간 보고 대신, 연대 위원단들의 의장들이 녹화 영상으로 보고했다: 글로벌 교회의 첫 예산들이 통과되고 재정이 공개되었으며; 라이베리아, 르완다, 앙골라 및 나일 밸리 지역에서 새 연회들이 형성되고, 약 600개 회중으로 이루어진 인도 운동이 1년도 안 되어 연회로 조직되었으며, 서유럽 전역에서 새 지도자들이 모이고 멕시코, 브라질, 페루 및 기타 라틴아메리카 신흥 지역에서 조직이 진행 중이고; 두 개의 백서가 제안된 교육 문서로 감독회에 보내졌으며, 데이비드 F. 왓슨 박사 목사와 제이슨 비커스가 공동 의장인 집필팀이 신앙 조항을 작성했고; 목회자 자격 심사를 위한 세 가지 정의된 경로, 협력 기관 및 과정 학습과 인증 평신도 사역 프로그램의 기준, GMC 목회학교의 프레임워크, 그리고 2026년에 목회자 훈련 기금에서 배분된 100만 달러; 매년 3퍼센트의 새 교회 목표, Engage 선교 마스터클래스, 1천 개가 넘는 자료의 다국어 도서관, 그리고 Ablaze Initiative의 교회 개척, 선교 동원 및 재난 대응 훈련; 올해 코스타리카 감리교회의 연약 파트너로 한국 감리교회가 추가되었고, 베네수엘라와 피지의 감리교인들은 정회원이 되는 것이 그들의 다음 단계라고 분별했으며; 2024년 총회가 지시한 감독들의 임명 및 360도 평가 도구의 개발; 그리고 14개 작업팀을 이끄는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총회 위원단의 업무로서, 2032년 총회 개최지는 추천하지 않고 이를 다음 위원단에 맡겼다.

라그론은 연대 협의회 위원들을 단상으로 불러,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제도, 연회, 제자도, 교리와 정의로운 사역, 목회와 고등 교육, 하나님 나라 확장 및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들,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연대상소협의회 및 총회 위원단 각각의 위원들이 일어서서 계속 서 있도록 요청했고, 회의는 그들 모두에게 함께 감사를 표했다.

라그론은 이어 ¶ 807.4(b)에 따라 마련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는데, 이는 연대 협의회에 적극적인 글로벌 전략 수립에 참여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그녀는 핵심 팀을 소개하고, 이 프레임워크는 입법 제안이 아니라고 밝히며 델리게이트들에게 투표 기기를 내려놓아 달라고 요청했다. 사이먼 마폰다는 마크 웹 감독의 말로 그 중심의 확신을 소개했다 — “당신의 교회가 제자를 배가하고 교회를 배가할 의지가 없다면, 글로벌 감리교회는 아마도 당신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유진 백과 캐시 로어스는 교회의 여섯 가지 가치를 성경적, 역량을 부여받은, 웨슬리안, 선교적, 글로벌 및 연대로 제시했다. 가브리엘라 코파스 목사(Central Europe)는 공동의 초점 네 영역을 제시했다: 제자를 만드는 문화 조성, 리더십 개발, 기존 회중의 활성화, 그리고 새 신앙 공동체의 개척. 레아 히드-그레고리 감독은 세 영역을 제시했다 — 선교가 살아나는 지역 교회; 지역 교회들이 번성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연회; 그리고 공동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어떤 지역 교회나 연회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수행하는 글로벌 교회. 마이크 셰이퍼는 이 프레임워크가 세 수준 각각에서 가능하게 하는 책임감과 시편 133편으로 마무리했다.

레빙스턴 감독은 이 프레임워크를 입법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확언으로 회의에 제시하며, 이를 확언하는 이들에게 일어서 달라고 요청했다. 회의는 일어서며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방향을 확언했다.

라그론은 통역사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두 번, 위원단들의 계속 여부에 대한 표결은 이 회기에서만 이루어지는 회의의 표결이며 입법 위원회들에 여전히 계류 중인 어떠한 입법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그론 목사는 이어 다음 동의를 제안했다:

감독님, 연대 협의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교리와 장정 제802.2항을 준수하여, 제802.3항에 명시된 기존 일곱 연대 위원단이 이번 총회의 청원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변경을 조건으로 계속되도록 동의합니다.

레빙스턴 감독은 이 동의가 협의회에서 나왔으므로 재청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토론을 요청했으나; 제안된 것이 없었다. ¶ 802.3에 명시된 일곱 연대 위원단은 거수로 계속되었다.

두 번째 장정상의 요구사항으로서, 그리고 협의회를 총회 사이에 있는 회의의 대리인으로 설명하면서, 라그론 목사는 다음 동의를 제안했다:

그러므로 제208항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연대 협의회는 조치들을 확언하도록 동의합니다.

줄리어스 넬슨 목사(Grain Coast)가 다섯 번째 마이크에서 발언권을 얻었다. 넬슨 목사는 새 감독 선거 전에 이번 총회가 비준하도록, 5월 30일 본회의에 관하여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또는 연대 협의회가 보고할 기회를 의사일정 위원회가 제공하도록 동의했으며, 그 조치가 비준을 위해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회의가 코스타리카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의 협의회 결정들을 확언하도록 요청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빙스턴 감독은 그 시점에서 그 동의가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그것은 나중에 회의에 다시 상정되어 토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의 연대 협의회 조치들은 거수로 확언되었다.

연회 위원단 의장인 클라크 앳킨스 목사(Trinity)가 다음 동의를 제안했다:

연회 위원단을 대표하여, 지난 2년 동안 연회 위원단이 취한 조치들, 오늘 우리 총회에 참석한 새 연회들의 소집 및 그 발전과 관련된 절차들을 포함하여, 교리와 장정 제814.7항에 따라 이번 총회가 이를 비준하도록 동의합니다.

레빙스턴 감독은 동의가 회의에 적절히 상정되었다고 판단하고 토론을 요청했으나; 제안된 것이 없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새 연회들의 소집을 포함한 연회 위원단의 조치들은 거수로 비준되었다.

목회 입법 위원회 의장인 테디우스 세일스 목사(Northeast)는 입법 위원회들이 “글로벌 감리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는” 일치의 정신으로 회의에 주어진 모든 청원을 검토해 왔다고 보고했다. 그는 자기 위원회의 임원들 — 부의장 로라 새펠 목사, 비서 브리짓 더글러스, 보조 비서 재키 스와닉, 회의 진행 규율 위원 캐서린 라일리 및 기술 보조 제러미 바비 목사 — 에게 감사를 표하고, 회의에 월요일 일일 저널 6쪽의 합의된 회의순 MIN-1A를 보도록 안내한 뒤, 그 승인을 동의했다.

로라 새펠 목사(Allegheny West)가 세 번째 마이크에서 발언권을 얻어, 안수받은 목회 및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청원 1309를 합의된 캘린더에서 삭제하도록 동의했다. 레빙스턴 감독은 추가로 열 명의 델리게이트가 그 요청을 지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거수를 요청했으며, 열 명이 있음을 확인했다. 청원 1309는 합의된 회의순 MIN-1A에서 삭제되었다. 새펠 목사는 이어 청원에 대한 개정을 동의하기 시작했고, 의장은 계류 중인 동의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판정했다. 회기 후반에 의장은, 청원이 캘린더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그 개정은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청원 1309는 나중에 다루어져 회의에 다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이 이제 캘린더가 청원 1229 하나만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자, 안건은 투표 기기에 부쳐졌다. 합의된 회의순 MIN-1A는 362 대 6으로 승인되었다.

연회 입법 위원회 의장인 베스 앤 쿡 목사(Great Lakes)는 자기 소위원회들의 임원들에게 일어서서 소개받도록 요청하고, 자신이 위원회의 첫 열매라고 부른 것을 상정했다: 700년대 항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참조를 삭제하는 청원인 청원 1071은 만장일치로 보고되었고 월요일 일일 저널 7쪽의 합의된 회의순 CONF-1A로 인쇄되었다. 그녀는 “총회” 앞의 “창립”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그 효과라고 설명하며, 그 채택을 동의했다.

마크 보웰 목사(Mid-Texas)가 첫 번째 마이크에서 발언권을 얻어, 투표 기기 사용이 절대적 요구사항인지 또는 회의의 의사인지 질문하며, 단순 과반수 사안에서는 거수 표결이 더 빠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톰 램브레히트 목사는 규칙이 청원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계수 표결을 요구하며 절차 사안은 거수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청원에 관해서는 정확한 표결 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청원 1071에 대한 안건은 투표 기기에 부쳐졌다. 청원 1071은 기권 1표와 함께 363 대 0으로 승인되었다.

채플 템플 목사(Trinity)가 여섯 번째 마이크에서 발언권을 얻었다. 템플 목사는 다음 동의를 제안했다:

감독님, 회의의 남은 기간 동안 합의된 캘린더 항목들에 대하여 단지 거수로 표결하는 심의를 허용하기 위해 규칙을 정지하도록 동의합니다.

레빙스턴 감독은 그 동의에 3분의 2 표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안건을 투표 기기에 부쳤다. 규칙 정지 동의는 315 대 49로 승인되었다 — 행사된 364표의 86.5퍼센트로, 요구된 3분의 2를 넘었다. 합의된 캘린더 항목들은 회의의 남은 기간 동안 거수로 처리될 수 있다.

스콧 존스 감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요하네스버그 성공회 교구의 대표 매튜 버틀러를 소개하고 환영했으며, 다른 교회 일치 운동 손님들은 목요일에 소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램브레히트 목사는 입법 위원회들이 오후 1시 45분에 각 위원회실에서 다시 소집될 것이라고 알리고, 투표 기기는 좌석에 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에서 콜레라와 싸우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 위원단의 지원을 받아 파견된 의료팀에 콜레라에 감염된 콩고인 의사가 동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그와 그 나라에서 콜레라와 에볼라 모두에 맞서 일하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레빙스턴 감독은 콩고에서 콜레라와 에볼라로 고통받는 이들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를 위해 회중을 기도로 인도하고, 식사를 축복했다. 레빙스턴 감독은 오후 12시 47분에 점심을 위해 회중의 리세스를 선언했다.

입법 위원회 회의

함께하는 언약 안에서

글로벌 감리교회와 한국 감리교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우리의 공동 사명을 위하여, 글로벌 감리교회와 한국 감리교회는 이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 관계를 수립한다. 상호 존중과 선교적 협력으로, 우리는 서로를 웨슬리안 전통 안에서 자치하는 교회로 인정하며, 그 교리와 규율은 그 운동의 역사적 가르침과 실천을 반영한다.

기도와 성령께서 영감하신 분별력과 함께, 모든 적절한 절차, 심사 및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조직적 승인이 완료되었음이 이해된다. 우리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정신 안에서 기독교 연합에 헌신한다(요한복음 17:21).

우리는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증언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와 관계를 세우는 데 헌신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 사항에 헌신한다:

1. 우리는 서로의 세례와 안수의 유효성을 상호 인정하며, 성찬 교제 안에서 서로를 환영한다. 두 신앙 공동체는 안수받은 목회자들의 상호 인정을 향해 노력하고, 목회자들이 신학적 및 규율상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경우 교단 간에 사역하도록 허락하는 데 헌신한다.
2. 우리 교회들의 지도자들은 서로를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3. 필요할 때 지역 교회, 지구 및 연회 간의 파트너십을 격려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 언약 위원단을 설립한다. 그 목적은 선교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동의 선교 및 사역 전략과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에 협력하는 것이다.
4. GMC 또는 KMC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목회자 또는 회중이 그 소속을 다른 교단으로 전송하기를 원할 경우, 그 회중 또는 목회자는 사전에 해당 연회에 통지해야 하며, 그러한 전송은 받는 연회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연회들 간의 상호 협의와 합의에 따라 진행된다.
5. 각 교회는 한 명의 감독, 한 명의 평신도 및 한 명의 목회자를, 그 비용은 해당 인물의 소속 교회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교회의 총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는 델리게이트로 착석하도록 초청할 것이다. 델리게이트들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들은 총회 회의록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이 언약은 각 교회의 총회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승인 시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한 교회 또는 양 교회가 그 총회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조치에 의해 참여를 철회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기도로 흠뻑 적셔지고, 서로에 대한 깊은 상호 존중을 동반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의 일치에 대한 깊은 헌신을 상징하는 이 언약은, 2026년 9월 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기간에 서명되고 기념된다.

한국 감리교회

글로벌 감리교회

심의 대상 청원

위원회 조치

제3일 의사일정표. 일괄동의안 식별자에서 숫자는 회의 일자를, 문자는 그 처리 결과를 나타내며, A는 지지, B는 반대를 의미합니다. 일괄동의안에의 배치는 허용되는 것이며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주 초에 취해졌고 이전 판에 보고된 위원회 조치는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를 수반하는 청원 아래에 인쇄되며, 타이핑된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의 FINAL에서 생성된다. 일반 밑줄과 취소선은 청원인의 자체 표기이고, 굵은 밑줄과 취소선은 위원회의 후속 표기이다.

회의 — 청원 6건

일괄동의안 CONF-3B — 부결된 청원

청원 1059 | ¶ 711.2 | 413쪽 총회에서의 공정하고 동등한 델리게이트 대표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1 / 반대 38 / 기권 0

청원 1063 | ¶ 711.1 | 412쪽 연회의 사역과 사역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회의 역량 강화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1 / 반대 37 / 기권 0

청원 1141 | ¶ 710.1 | 397쪽 연회 위원회의 구성원

다음을 채택하여 부결됨: 찬성 3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90 | ¶ 710.1 | 398쪽 연회의 협의회, 임원회 및 위원회를 별도 단락으로 분리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0 / 반대 35 / 기권 0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041 | ¶ 711.1 | 411쪽 연회 연대 기금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5 / 반대 33 / 기권 2

청원 1064 | ¶ 710.4 | 401쪽 연회의 재정 감사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39 / 반대 0 / 기권 0

개정:

4. 재무 및 행정 위원회. 재정 및 행정위원회는 연회를 위한 재정 및 행정 정책, 예산, 절차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조정된 계획을 개발,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연회의 모든 기금, 조직 및 계정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연례 감사를 마련하고, 연회에 완전하고 충실한 보고를 해야 한다. 감사된 재무제표는 공개 플랫폼에 게시되며 연회 회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감사란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팀이 재무 보고서, 기록, 그리고 내부 통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감사는 재정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자산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관련 법률 및 연회의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됩니다.

헌법, 연대 조직, 재정 — 청원 18건

일괄동의안 CCOF-3A — 지지된 청원

청원 1004 | ¶ 449 | 449쪽 지역 교회 연대 기금 및 복지제도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0 / 반대 1 / 기권 0

개정:

10. 지역 교회는 파송되거나 배정된 목회자의 일반 복지가 돌봄을 받도록 장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건강 보험(그 수단은 연회가 정할 수 있음), 연금 및 생명 보험이 포함될 수 있다. 지역 교회는 파송되거나 배정된 목회자의 일반 복지가 돌봄을 받도록 장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건강 보험(그 수단은 연회가 정할 수 있음), 은퇴 및 생명 보험이 포함될 수

있다.

청원 1067 564쪽 결의안 교리와 장정을 위한 글로벌 상황화 태스크 포스 설립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0 / 반대 1 / 기권 0

청원 1108 | ¶ 811 | 526쪽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제도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8 / 반대 0 / 기권 0

개정:

f. 재정, 행정 및 복지제도 위원단은 2029년 1월 1일까지, 또는 그보다 이전에 가능하다면, 건강 보험 및 은퇴 복지 책임을 총회 교회에서 연회로 질서 있게 이관하는 것을 개발하고 시행할 목적으로 복지제도 전환 팀을 설치해야 한다.

g. 재정, 행정,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연대 협의회가 부여한 기타 책임을 수행합니다.

청원 1248 | ¶ 1012.9 | 559쪽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 1012.9d 삭제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50 561쪽 신설 ¶ 10XX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새 ¶ 1014 제안

원안으로 지지: 찬성 49 / 반대 1 / 기권 0

청원 1273 | ¶ 802 | 473쪽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 802 재작성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1 / 반대 0 / 기권 1

일괄동의안 CCOF-3B — 부결된 청원

청원 1087 | ¶ 206 | 422쪽 지역 교회의 정의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2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08 | ¶ 1012 | 556쪽 임원회의 요청을 비준하는 구역회의 의무 명확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57 | ¶ 813.1 | 534쪽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 813.1 폐지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38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62 | ¶ 208.1 | 436쪽 총회 개최 연도 및 감독 임기 단축 ¶ 208 제VII조 및 ¶ 604.8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2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72 | ¶ 802.3 | 475쪽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 802.3 재작성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1 / 반대 0 / 기권 1

청원 1274 | ¶ 801 | 471쪽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 801 재작성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1 / 반대 0 / 기권 1

청원 1282 | ¶ 804.4 | 492쪽 연대 위원단들에 총리사 추가

다음을 채택하여 부결됨: 찬성 41 / 반대 0 / 기권 1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090 | ¶ 208.1 | 435쪽 교회 내 평신도 지도력 명확화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2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91 | ¶ 208.5 | 437쪽 연대 협의회 권한과 권위 명확화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2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04 | ¶ 808 | 507쪽 하나님 나라 확장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8 / 반대 0 / 기권 0

개정:

2. 위원단은 다음 사역 영역에서 지역 교회, 연회 및 총회 교회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대 협의회가 개발하고 승인한 전략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위원단은 다음 사역 영역에서 지역 교회, 연회 및 총회 교회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대 협의회가 개발하고 승인한 전략 계획을 지원해야 한다:

a. 전도. 전도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추천하며 모든 사람과 교회가 전도에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개인과 회중 모두가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고 교단 전반에 걸쳐 영적 갱신을 촉진하도록 훈련하고 갖추게 한다. 개인과 회중 모두가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고 교단 전반에 걸쳐 영적 갱신을 촉진하도록 훈련 및 역량 강화와 연결하고, 전도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또는 홍보하며, 모든 사람과 교회가 전도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이 위원회는 또한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를 위한 전도 사역과 직무에 대한 기준을 권고하고, 그러한 임무에 임명된 이들을 위해 감독, 연회, 그리고 개체교회에게 설명하고 후원합니다.

b. 교회 증식. 교회 증식은 지역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열매이다. 위원단의 역할은 지역 교회들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며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글로벌 감리교회 지역 교회를 개척할 지도자를 세우도록 돕는 자료를 개발하거나 식별하고, 파트너를 검토하고 추천하며; 감독, 연회 지도자 및 지역 교회와 협의하여 교회 개척 및 증식을 계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제자 삼기와 교회 증식 과정의 모든 측면에 관한 훈련 자료를 지역 교회에 제공하고;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교회 개척의 부르심을 확장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교회 개척과 증식을 위한 자료를 식별하고 제공하며, 감독, 연회 지도자 및 지역 교회와 협의하여 교회 개척 및 증식을 계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교회 개척자를 식별하고 모집하며 훈련하고, 교회의 개척과 증식을 장려한다.

c. 선교 동원. 개체교회들이 선교적 사명을 향한 성경적 이해와 열정을 더욱 깊게 하도록 돕고, 언어적·국가적·지리적 경계를 넘어 제자들을 배가하는 적극적인 선교 참여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개체교회들을 준비시키는 자원과 훈련을 제공하고 선교적으로 건강한 파트너십을 개발하며, 검증되고 승인된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 파트너들과 개체교회·지방회·연회 간의 연결과 협력을 촉진하고, 선교사 사역과 직무를 위한 파송 기준을 개발하여 연회가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사들을 모집·훈련·파송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감독·연회 지도자·교회·선교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전략적 선교 동원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영적·육체적 필요를 모두 다루는 총체적 선교 전략과 복음 중심의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합니다.

지역 교회의 선교 활동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열정을 심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언어적, 국가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제자를 증식시키는 적극적 선교 참여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선교 봉사를 위해 지역 교회에 역량을 갖추게 할 자료와 훈련을 제공하고, 선교적으로 건강한 파트너십을 개발하며; 검토되고 추천된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 파트너들과 지역 교회, 지구 및 연회 간의 연결과 파트너십을 촉진하며; 선교사의 사역과 직분을 위한 파송 기준을 개발하여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사의 모집, 훈련 및 배포를 위한 연회의 역량을 갖추게 하고; 감독, 연회 지도자, 교회 및 선교 파트너와 협의하여 전략적 선교 동원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영적 필요와 육체적 필요 모두를 다루는 전체론적 선교 전략과 복음 중심의 지역 사회 개발을 촉진하고;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촉진한다.

d. 재난 대응. 연회 안에서 재난 대응, 구호, 회복 사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 연회들과 협력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자격부여·지원·장비할 수 있는 검증되고 승인된 글로벌 감리교회 재난 대응 파트너들과 개체교회·지방회·연회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며, 연회의 요청이 있을 때 대응 서비스를 배치하는 데 협력하되, 연회와 확장된 GMC 연결망, 승인된 재난 대응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개체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대응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회에서 재난 대응, 구호 및 복구 사역을 개발하는 일에 연회와 협력하고; 재난의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에 대응하도록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고, 자격을 인증하며,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검토되고 추천된 글로벌 감리교회 재난 대응 파트너들과 지역 교회, 지구 및 연회 간의 연결과 파트너십을 촉진하며; 연회가 요청할 때 대응 서비스 배포에 협력하되, 언제나 연회, 확장된 글로벌 감리교회 연결 및 추천된 재난 대응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지역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지역 사회를 위한 대응 활동을 이끌도록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e. 전도, 교회 증식, 선교 동원 및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연대 협의회가 부여하는 그 밖의 책임을 수행한다.

청원 1194 | ¶ 803 | 478쪽 모든 위원단, 협의회 및 위원회를 위한 공천 및 선거 절차 간소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1 / 반대 0 / 기권 0

개정:

이 청원은 ¶ 803.1, ¶ 803.3, ¶ 803.4, ¶ 920.5 및 ¶ 605.1을 개정하고, ¶ 803.2, 813.2, 814.2를 삭제하며 새 ¶ 803.2를 추가한다 ¶ 803. 연대 위원단들의 구성원. 연대 위원단, 협의회 및 위원회를 위한 공천 및 선거. 연대 위원단, 연대상소협의회 및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구성원, 공천 및 선거 교리와 장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연대 위원단의 구성원, 협의회 및 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교리와 장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연대 위원단, 연대 협의회, 상소협의회 및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구성원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위원회는 교리와 장정의 관련 단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출된다. 2. 2026년 총회부터, 연회들이 추천한 사람들은 후보자가 선정되는 후보군이 된다. 위원단,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섬기도록 선출되거나 파송된 모든 사람의 임기는 6년이며, 구성원은 총 12년을 위해 한 차례 재선되거나 재파송될 수 있다.

1. 2026년 총회부터, 연회 대표단들이 추천한 사람들은 후보자가 선정되는 후보군이 된다. 위원단, 연대 협의회, 상소협의회 및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서 섬기도록 선출되거나 파송된 모든 사람의 임기는 6년이며, 구성원은 총 12년을 위해 한 차례 재선되거나 재파송될 수 있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사람은 2026년 총회에서 공천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들의 2년 임기는 위 임기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사람들의 2년 임기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산입되지 않는다 2026년 총회부터,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각 연회는 평신도 및 목회자 대의원 과반수 투표로 최대 16명(목회자 또는 평신도, 단 감독은 제외)을 연대 위원회 후보로 공천해야 하며, 이 중 최소 절반은 평신도여야 합니다. 각 후보자는 은사, 훈련 및 경험에 근거하여 하나 또는 두 개의 연대 위원단을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 각 연회 대표단은 평신도와 목회자 델리게이트 모두의 다수결 투표로, 최대 20명(목회자 또는 평신도이나 감독은 제외)을 연대 위원단, 협의회 및 위원회 후보자로 공천할 수 있다. 각 연회 대표단은 평신도와 목회자 델리게이트 모두의 다수결 투표로, 각 연대 위원단, 연대 협의회, 상소협의회 및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후보자로 최대 2명(목회자 또는 평신도이나 현직 감독은 제외)을 공천할 수 있다. 피공천인의 최소 절반은 평신도여야 합니다. 전체 후보자 중 적어도 절반은 평신도여야 한다. 각 후보자는 후보 지명에 동의해야 하며, 그 후 은사, 훈련 및 경험에 따라 대표단에 의해 하나의 연대 위원단,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지정되어야 한다. 20명 미만인 공천된 경우, 대의위원단은 총 지명 수가 20이 될 때까지 최대 2개의 위원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인원을 지명할 수 있으며, 지명된 인원 중 최소 절반은 평신도여야 합니다. 다양한 인종, 민족, 부족, 성별, 경제 및 연령별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c. 총회의 행정 공천 위원회는 연회 대표단들로부터 받은 후보자 명단에서, 총회가 선출할 교회의 연대 위원단,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봉사할 다양한 개인들의 후보자 리스트를 제안해야 한다. 단, 후보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연회 지명 개인은 회의장에서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 총회의 행정 공천 위원회는 연회 대표단들로부터 받은 후보자 명단에서, 총회가 선출할 교회의 연대 위원단, 연대 협의회, 향소위원회 및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서 봉사할 다양한 개인들의 후보자 리스트를 제안해야 한다. 단, 후보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연회 대표단이 지명한 개인은 조직 및 우리의 함께하는 삶의 언약 계획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 대표단이 재지명할 수 있다. 각 신규 연대 위원회들의 후보자 리스트에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회원 수와 위원회가 신규 연대 위원회 의장으로 공천하는 인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연대 위원단, 협의회 및 위원회의 후보자 리스트에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회원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연대 위원단, 연대 협의회 및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후보자 리스트에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회원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리와 장정이 의장 지명에 관한 다른 절차를 명시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각 위원단, 협의회 및 위원회의 의장이 될 사람도 지명해야 한다.

3. 총회는 각 연대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를 선출해야 합니다. 각 연대 위원단 회원의 나머지 3분의 1은 해당 연대 위원단의 지명에 따라 연대 협의회가 선출해야 한다. 총회는 토론이나 논의 없이 단순 다수결로 각 위원단, 협의회 및 위원회의 명시된 수의 회원을 선출해야 한다. 각 연대 위원회, 협의회 및 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은 해당 연대 위원회의 공천에 따라 연대 협의회에서 선출됩니다.

총회는 3분의 2를 각 연대 위원단 회원의 명시된 수를 선출해야 한다. 각 연대 위원단의 명시된 회원 중 활동 중인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의 1의 회원은 해당 연대 위원단들의 지명에 따라 연대 협의회가 선출해야 한다. 연대 협의회가 최초로 선출한 목회자 중에 총리사가 없는 경우, 감독회는 발언권만 가지고 봉사할 총리사를 파송해야 한다. 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 연대 위원단에 지원할 수 있다. 연대협의회에서 선출하는 위원들은 연대위원회의 사역에 필요한 포용성, 경험 또는 특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출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연대 위원단에서 봉사하는 모든 활동 중인 감독과 의장을 제외하고, 각 연대 위원단의 회원은 적어도 절반이 평신도여야 한다.

4. 감독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 이상의 연대 위원회(연대 협의회는 포함하지 않음)에서 동시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활동 중인 감독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둘 이상의 연대 위원단, 협의회 또는 위원회(연대 협의회는 제외)에서 동시에 봉사할 수 없다. 의장을 포함한 연대 위원단, 협의회 및 위원회의 회원은 보수 없이 봉사해야 한다. 의장을 포함한 연대 위원단, 연대 협의회, 향소위원회 및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회원은 보수 없이 봉사해야 한다. 연대 위원단, 협의회 및 위원회 회원의 여행 및 회의 경비는 각 연대 위원단, 협의회 및 위원회가 자체 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연대 위원단, 연대 협의회, 향소위원회 및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와 회원들의 여행 및 회의 경비는 각 연대 위원단, 협의회 및 위원회가 자체 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813.2 이 위원단은 해당 위원단에 배정되어 의장으로 봉사하는 활동 중인 감독 외에, 총회가 선출한 8명의 회원으로 처음에는 구성된다. 그 후 위원단은 연대 협의회가 선출할, 최대 12명까지의 회원 수를 최대 4명의 추가 회원 및 위원단에 배정된 의장을 더한 수로 제한하며, 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의장과 위원들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합니다.

¶ 814.2 이 위원단은 감독회가 선출한 두 명의 활동 중인 감독 외에, 총회가 선출한 12명의 회원으로 처음에는 구성된다. 그 후 위원단은 연대 협의회가 선출할, 위원단에 배정된 두 명의 활동 중인 감독을 더하여 최대 18명까지의 회원 수를 최대 6명의 추가 회원으로 승인을 조건으로 제안한다. 위원단의 의장은 ¶ 804.1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출되며 활동 중인 감독 중 한 명이어서는 안 된다. 의장과 위원들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합니다.

1. 연대 협의회는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후보 지명을 받아, 자리, 민족 및 성별 면에서 다양한 평신도-후보 6명과 목회자 후보 6명의 후보자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총회 30일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2024 교리와 장정-83. 총회 대의원은 현장에서 추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평신도 위원 6명과 목회자

위원 6명을 선출하는 투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대의원은 평신도 및 목회자 후보 모두에게 투표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당선을 위해서는 출석하여 유효 투표를 한 대의원 중 최소 60% 이상의 찬성에 1표를 더한 득표수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6년 임기를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수행할 수 없다. 총회에 의한 회원 선출이 끝난 후, 연대 협의회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 목회자 회원 2명과 평신도 회원 2명을 추가할 수 있다.

청원 1332 | ¶ 1002 | 552쪽 연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탁 조항'을 사용할 권리를 연회에 부여하고자 함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7 / 반대 1 / 기권 0

개정:

~~이 청원은 ¶ 1002 및 ¶ 1003을 개정한다 이 청원은 ¶ 1002를 개정한다 ¶ 1002. 자산 관리 책임 개체교회, 연회, 연대 위원회 또는 글로벌감리교회의 다른 단체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신탁 조항은 없다. 연회는 지역 교회의 사용과 유익을 위하여 재산을 전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는 강제적이어서는 안 된다. 연회가 그 재산을 위탁하기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개체교회, 연회 또는 연대위원회는 법인 해산 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법인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 1003. 탈퇴 절차. 최소 90일간의 분별과 기도의 기간을 거친 후, 글로벌 감리교회의 한 교회는 교회 총회 또는 연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감리교회의 한 교회는 최소 90일간의 분별과 기도 기간을 거친 후 교회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적어도 90일간의 분별과 기도 기간 후, 글로벌 감리교회의 회중은 교회 총회 또는 연회의 다수결 투표로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다.~~

~~¶ 1003. 탈퇴 절차. 글로벌감리교회의 한 교회는 최소 90일간의 분별과 기도 기간을 거친 후 교회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다.~~

¶ 1002. 자산 관리 책임 개체교회, 연회, 연대 위원회 또는 글로벌감리교회의 다른 단체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신탁 조항은 없다. 연회는 지역 교회의 사용과 유익을 위하여 재산을 전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지역 교회도 그 재산을 연회에 신탁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강제적이어서는 안 된다. 각 지역 교회, 연회 또는 연대 위원단은 해당 기관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법인 기록에 지정해야 한다. 각 지역 교회, 연회 또는 연대 위원단은 해당 기관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법인 기록에 지정해야 한다.

교리와 성찬 — 청원 3건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409 | ¶ 103 | 6쪽 언약적 연대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개정:

삭제 ¶ 103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 103. 우리의 함께하는 언약 생활의 원칙.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인 종교 외에는 어떤 종교도, 사회적 거룩함 외에는 어떤 거룩함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웨슬리는 “사회적 거룩함”을 언급하면서, 거룩함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포함하는 길이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믿음으로 결속된 언약 백성이며,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공동 사명이 흘러나온다. 우리는 지역적으로나 교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회의 표현이다:

1. 역사적 신조와 우리의 총칙 및 신앙 고백(채택되는 경우 신앙 조항)에 정의된 역사적 기독교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에 뿌리내리고 기초를 두며, 이로써 우리가 믿음에 대한 웨슬리안 이해에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의 변화시키는 관계로 인도한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기로 헌신한다. 이 대위임령의 일부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나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고 부르신다.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는 사명이 영원한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3.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하는 모든 이가 믿음 안에서 깊어지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 열매와 은사 모두로 증명되는 온전한 성화를 추구하도록 한다. 우리는 웨슬리안 반 및 밴드 모임과 같은 제자도 및 책임감 그룹을 통하여 이 성화를 향해 나아가며, 그 밖의 모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한다.

4. 예언, 치유, 방언, 지식의 말씀, 표적 및 기사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성경에 열거된 영적 은사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자 한다.

5.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 자신(목회자, 교회 및 모든 신자)을 삶에 대한 정기적인 책임감에 복종시키고; 이 함께하는 언약 생활을 인도하고 가르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로서 하나님의 회복된 왕국의 충만함을 경험한다.

6. 평신도를 세례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성령께 부르심 받고 선택받으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인정하고; 평신도가 기도, 임재, 은사, 봉사 및 증거로 교회를 강건하게 하려는 헌신을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갖추게 하며; 모든 인종, 민족, 국적, 능력 및 연령의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참여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언하며; 평신도가 우리의 목회자들과 완전한 파트너십 안에 있음을 이해한다.

7. 성경의 권위 있는 증언에 기초를 두고, 교회에 의해 구별되며, 우리의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고 그에 책임을 지는 사역에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지닌 것으로 인정된 목회자들의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격려하고 확언한다. 우리는 이들이 안수받은 서번트 리더십의 부르심을 추구할 때에도 평신도로서의 최초의 부르심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8. 우리가 글로벌 감리교인으로서 사명과 사역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기념한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함께 묶는 우리의 연대 조직과 구조를 지지한다.

9. 가능할 때마다 상호 파트너십과 공동 사명을 통하여 더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소중히 여기며,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보편적 정신”을 나타낸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과업을 이루기 위해 서로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글로벌 교회를 꿈꾼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약한 자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위하여 일어서는 것을 포함하여 그분의 지상 사역 중에 시작된 왕국의 사역을 계속한다.

¶ 101. 우리의 신앙 유산 5. 영국의 많은 감리교인들, 특히 요한과 찰스 웨슬리의 노력으로 기독교 신앙과 삶에 대한 뚜렷한 감리교적 표현을 낳은 조직과 문헌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감리교는 보편적인 은혜의 역사, 믿음에 의한 칭의, 거듭남, 구원의 완성, 즉 온전한 성화 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나라, 특히 교회를 개혁하고 성경적 거룩함을 온 땅에 퍼뜨리는” 사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교회와 나란히 구조와 언약 공동체(신도회, 밴드 및 반)를 만들었다.

청원 1434 | ¶ 108 | 29쪽 개정된 총칙(감리교회의)을 BDD의 기초 원칙 섹션에 배치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52 / 반대 0 / 기권 1

개정:

[개정안 미표시: 이 청원은 ¶ 108을 새로운 ¶ 404로 재배치하고 그 뒤의 문단 번호를 다시 매긴다. 재배치는 표시된 레드라인으로 나타낼 수 없으며, 문단 차이는 단편만 반환한다. 위원회의 조치는 위에 기록된 대로 유효하며, 본문은 청원 파일을 참조하라.]

청원 1441 | ¶ 106 | 12쪽 글로벌 감리교회의 신앙 조항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6 / 반대 0 / 기권 0

개정:

¶ 106. 글로벌 감리교회의 신앙 조항. 신앙 조항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규범적 교리 기준을 규정한다. 이를 위해, 이는 보편적인 교회의 신조 전통과 일치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고유한 웨슬리안 감리교 강조점과 관심사 및 우리의 신학적 믿음의 유산을 표현한다. 이를 위해, 이는 보편적인 교회의 신조 전통을 확언하고, 우리의 개신교 신학적 믿음의 유산을 표현하며, 우리 교회의 고유한 웨슬리안-감리교 강조점과 관심사를 명시한다. 신앙 조항이 기독교 전통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명시하는 한편, 우리는 니케아 신조(381)의 원래 문구가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신다고 진술하였으며, 세계 전역과 글로벌 감리교회 내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께서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는 추가 선언을 채택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전 세계적 특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감리교인들은 이미 예배와 믿음의 교육 모두에서 니케아 신조를 사용할 때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구절을 포함하거나 생략할 자유가 있다(¶ 105). 니케아 신조에 관한 이 관행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인들은 제III조 “성령”의 첫 문장에서 “그리고 성자로부터”를 생략할 수 있다. 신앙 조항은 성경에 의해 확언되며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한다. 이는 “단번에 성도들에게 맡겨진 믿음”(유다서 3)을 선언하는 구성 기준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으로 향하게 하는 신실한 가르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가르침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며 위엄과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십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를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그분의 내주하시는 임재를 통하여 우리를 성화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께서는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교회를 능하게 하십니다. 장차 올 영광을 보증하는 보증금으로서, 그는 신실한 자들을 위로하고 지탱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신적 영감과 권위를 믿습니다. 구약은 신약과 반대되지 않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두 성경 모두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확인하는 모든 것에서 오류가 없으며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무오한 규칙이다. **성경은 참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무오한 규칙이다.**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성경에 계시되지 않았거나 성경에 의해 확립되지 않은 것은 구원에 필수적인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례가 보이는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시한다고 믿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권속으로 편입되는 표징이자 인치심이다. **우리는 가시적인 교회와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으로 들어감을 표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권속으로 편입되는 표징이자 인치심이다. 세례는 회개, 죄로부터의 정결케 됨,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을 의미한다.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들이 신자들의 자녀를 포함하여 유아들을 기독교 세례의 합당하고 받아들여지는 대상으로 삼으며,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세례 받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공적인 신앙 고백과 평생의 제자도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으로서 세례를 확증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교회의 특별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으며, 악인은 영원한 정죄에 이르고 의인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사법 행정 — 청원 1건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130 584쪽 제IX부 / JPP 사법 행정 절차 통합(교리와 장정 및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32 / 반대 0 / 기권 0

개정:

¶ 901. 교회의 책임. **구약과 신약 성경에 근거한 신실함과 거룩함의 부름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법 행정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추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화해 사역(고린도후서 5:18)에 기초합니다. Founded in the call to faithfulness and holiness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 Global Methodist Church judicial administration seeks to honor God in all things.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화해 사역(고린도후서 5:18)에 기초합니다.** 그 목적은 개인과 교회의 온전함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일치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잠언 25:9-10; 갈라디아서 6:1-2). 평신도와 목회자는 각각 자신의 교인 서약 혹은 안수 서약을 통해 서로에 대한 거룩한 신뢰의 책임 관계에 들어가며, 성령의 증거와 성경의 진리가 인도하는대로 은혜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기로 약속합니다(전도서 4:9-10; 골로새서 3:16).” 모든 고소 또는 상소의 목적은 회개, 용서,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져,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갈라디아서 6:1-2).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지혜, 공정성, 기밀 유지, 절차의 투명성 및 사랑을 중시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신실함으로 서로를 돌보고자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에베소서 4:15; 야고보서 1:26).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지혜, 공정성, 기밀 유지, 절차의 투명성 및 사랑을 중시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신실함으로 서로를 돌보고자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에베소서 4:15; 야고보서 1:26).** 은혜 안에서 행사되는 이러한 규율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그리고 세상에 베푸시는 구원의 사역을 증언합니다.

3. 기밀 유지. **모든 공식 고소 및 뒷받침하는 증거는 고소 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예: 해당 사건의 증인)를 제외하고, 또는 절차를 이끄는 사람이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교리와 장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 통지를 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기밀로 취급해야 한다. All persons leading and processing a formal complaint shall treat supporting evidence and documents with confidentiality.**

5. 과정의장. 고소 처리와 지휘함, 인도함을 담당하는 사람을 과정의장이라 부릅니다. 과정의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일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이 공식 수령인입니다.
- b. 피고소인이 총리사이면 피고인의 감독이 공식 수령인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감독인 경우, 과정 의장은 감독회에서 지정합니다.
- c.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인 경우, 해당 목회자의 총리사가 과정 의장입니다.
- d. 피고소인이 개체교회 교인인 경우, 해당 교회의 총리사가 과정의장이 됩니다.

고소 절차를 처리하고 지휘할 책임을 맡은 사람을 절차 의장이라 부른다. 절차 의장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a)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절차 의장은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의장 또는 그 의장이 지정한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회원으로 한다.

b) 피고소인이 총리사인 경우, 절차 의장은 피고소인의 감독이 추천하고 감독회가 승인한 총리사로 한다.

c) 피고소인이 총리사이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감독인 경우, 절차 의장은 감독회가 배정한 총리사로 한다.

d)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으로 섬기지 않는 목회자인 경우, 절차 의장은 그 목회자의 총리사로 한다.

e) 피고소인이 지역 교회 교인인 경우, 절차 의장은 그 지역 교회의 총리사로 한다.

관할권이란 제IX부가 특정 단계에서 고소를 지휘, 심리, 결정하거나 달리 조치하도록 임원 또는 기구에 부여하는 권한과 책임을 의미한다. 제IX부가 유보되거나 동시인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번에 하나의 임원 또는 기구만이 일차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관할권은 지정된 임원 또는 기구가 해당 단계에 필요한 고소, 기록, 추천, 항소 또는 기소 문서를 수령할 때 시작되며, 최종 처분 시 또는 다음 임원이나 기구가 관할권을 수령할 때 종료된다. 조사, 검토, 권고, 결정 또는 항소 심리를 위해 배정된 각 기구는 교리와 장정이 그 기구에 맡긴 권한과 독립적 판단을 행사해야 한다. 절차 의장, 감독, 총리사, 감리사, 감리사회 또는 이전 단계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도 이후 기구의 심의나 결정을 지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이 제한에는 목회자 회기에서 투표하는 목회자가 포함된다.

1. 모든 고소는 공식 수령인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에 대한 행정 고소의 경우, 공식 수령인은 지역 교회 목회 협력 위원회가 해결 방안을 시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직 감독으로 섬기지 않고 지역 교회에 파송되어 섬기는 목회자에 대한 행정적 고소의 경우,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수령인은 해당 지역 교회의 목회 협력 위원회가 해결책을 찾으려 시도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시도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공식 고소 이전에 목회협력 위원회로 참조되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지역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식 수령인은 고소를 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c. 피고인이 개체교회 교인인 경우, 과정 의장은 피고인에 대한 행정 또는 사법 고소가 접수되었음을 피고인의 개체교회 교회 임원회 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 피고인의 개체교회 담임목사, 그리고 총리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지역 교회 교인인 경우, 절차 의장은 피고소인의 지역 교회의 교회 협의회 의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 피고소인의 지역 교회 담임목사 및 총리사에게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법적 고소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과정 의장은 이 모든 기관에 고소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4. 복수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제9부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사법적 경제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a. 동일한 피고소인에 의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 또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개인은 함께 피고소인을 상대로 단일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단일 고소를 제기하는 다수의 당사자는 고소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를 위한 고소인 역할을 할 대표 한 명을 선정해야 하며, 그 고소인은 고소 과정을 위한 지원인을 선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b.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익/요구, 행위 또는 상황에 근거하여 동일한 피고소인에 대해 여러 건의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 절차 의장은 고소 과정 동안 처리를 위해 여러 고소를 병합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 여러 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은 별도의 고소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를 위한 고소인 역할을 할 고소 당사자 중 한 명을 선정해야 하며, 그 지정된 고소인은 고소 과정을 위한 지원인을 선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c. 하나의 고소를 제기한 복수의 당사자 또는 위의 하위항 (a) 및 (b)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복수의 고소를 제기한 여러 사람이 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절차 의장에 의해 병합되지 않는 경우, 고소 또는 고소들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는 고소 절차의 모든 단계에 출석하고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각자는 지원인을 둘 권리가 있다.

d. 하나의 고소에 여러 피고소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각 피고소인은 고소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출석 및 진술할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e. 여러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관련된 고소의 당사자, 또는 동일한 이익/요구, 행위 또는 상황과 관련하여 동일한 피고소인에 대한 여러 고소에 지명된 당사자는 고소에 기재된 이익/요구의 분할(분리)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사안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절차 의장 또는 사회자에 의해 분할될 수 있습니다.

f. 절차적 또는 기술적 사유로 병합된 고소 또는 통합 절차 내의 개별 고소가 기각되더라도, 동일한 절차적 흐름의 대상이 아니었던 청구를 가진 개별 고소가 원래의 고소를 바탕으로 각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계속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5. 고소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소인은 서면 답변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서면은 감독적 대응 회의의 최소 5(오)일 전까지 과정의장과 고소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과정의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고소 처리의 모든 진전 사항을 적시에 안내해야 합니다.

6. 과정 의장은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나 자의에 의해 지정된 모든 기한을 1회에 한해 30일(30)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9부에 따라 별도 허용된 연장 이외에 추가 연장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정에서 정한 모든 최소 기간 요건은 모든 당사자와 과정의장의 서면 동의하에 사례별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고소인은 최종 결정 이전,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든 서면으로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통지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동일한 범죄 혐의와 동일한 사실에 근거한 고소를 철회한 경우,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 903.4에 설명된 다수 당사자 고소와 관련된 정의 결의 합의의 경우, 모든 원고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의 결의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통지 후 그러한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정의 결의 합의에서 탈퇴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 당사자의 고소는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11. 복수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제 9부의 모든 절차에서, 사법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모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행위 또는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명의 개인이 한 건의 고소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고소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출석하고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소에 여러 피고소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각 피고소인은 고소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출석 및 진술할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b.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장이나 사실관계에 근거한 다수의 고소는, 모든 고소인의 동의 및 과정의장의 제안에 따라 한 건 또는 복수 건의 고소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c. 복수의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연루된 고소에서, 어느 한 당사자라도 사건 분할(분리) 요청권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분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12.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고소 과정 중 또는 이후, 현직 감독 피고소인은 고소인 목회자 또는 관련 당사자의 파송을 감독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11.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현직 감독 또는 총리사를 상대로 고소가 제기된 후, 피고소인이 더 이상 고소인과 파송 관계에서 섬기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인에 대한 다음 파송 변경은 감독회의 2/3 지지로 승인되어야 한다.

12. 평판과 소통. 고소 또는 기소가 기각되거나 상소에서 뒤집힌 경우, 절차 의장은 이전에 소통이 요구되었던 모든 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이 해결되었음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b. 조사 대응. 완수 위원회 내 조사 위원회가 소집되어 고소장의 진술(¶ 910 참조)에 대해 조사합니다. 사역 위원회의 행정 조사 위원회는 고소의 주장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어야 한다(¶ 910 참조). 조사 대응의 목적은 가능한 한 사실을 규명하고 상황과 해명을 검토하며,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고, 목회적 직무 수행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는 혐의와 관련된 모든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증인을 면담할 수 있습니다. 증인 면담 시, 피고소인과 고소인 및 그들의 지원인은 입회하여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위원회는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임장과 자격 포기, 해임조치, 비자발적 휴직 또는 비자발적 퇴직과 같은 비자발적 신분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위원회의 4분의 3 투표와 사역 위원회 과반수의 비준, 및 목회자 회기와 과반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및 제518항에 따른 목회자 회기의 승인.

c. 행정 심의. 연회 행정검토위원회는 조사적 대응의 보고서와 사역위원회가 조사적 대응에서 사용한 전체 절차를 검토하여, 그 절차가 ¶ 906의 요구 사항과 공정한 과정(¶ 905)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건과 사실관계나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조사적 대응의 절차와 그 과정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해당 기관들이 조사적 대응에 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고소인, 고소인, 총리사, 감리사 회의, 완수 위원회, 그리고 목회자 회의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보고에 앞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오류가 무해하다고 판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여부는 목회위원회와 목회자 회의의 대응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행정 심의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c. 행정 심사 및 제1심 상소. 조사 대응의 보고서 및 기록, 그리고 ¶ 917에 따라 제출된 적시의 상소 통지 및 상소 근거 진술서를 접수하면, 연회 행정 심사 위원회는 행정 심사 및 제1단계 상소를 목적으로 행정 고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조사 대응 보고서와 조사 위원회가 사용한 절차를 검토하여 ¶ 906의 요건, ¶ 905의 공정한 절차의 원칙 및 교리와 장정의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조항들이 준수되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건의 사실을 재심리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접수하거나, 결정의 본안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그 심사는 행정 절차의 기록에 근거하여야 하며 상소인이 제기한 각 상소 근거를 다루어야 한다.

행정 심사 위원회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제목 아래에 구성된 서면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요약; (2) 제시된 쟁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사실로 한정된 사실 진술; (3) 관할권; (4) 상소 근거 및 제시된 쟁점; (5) 분석 및 근거; 그리고 (6) 결정 및 결론. 보고서는 각 상소 근거를 별도로 식별하고 다루어야 하며, 교회법 또는 절차의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그러한 오류가 무해하였는지 또는 조사 위원회의 권고나 조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떠한 시정 조치가 요구되거나 권고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조사 위원회가 내린 본안에 관한 판단을 위원회의 판단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보고서는 조사 대응에 관하여 해당 기관들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고소인, 고소인, 총리사, 감리사회, 사역 위원회 전체 및 목회자 회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행정 심사 위원회가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에 의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개인 또는 기관이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또는 그 오류가 무해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시정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는 이후의 모든 심사 또는 상소에 반영되어야 한다. 행정 심사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취득한 날부터 삼십(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완료하여야 한다.

d.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그러한 결정은 연대상소협의회에 상소할 수 있다.

g. 글로벌 감리교회 목사 또는 목회자의 사역을 훼손하는 관계 및/또는 행동; 또는,

h.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 언약 밖에서 성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 (위반행위 당시 교회에 고용되어 있거나 교회에서 지도자 직분을 맡은 경우에만 평신도에게 적용됨); 또는 i. 아동의 학대, 착취 또는 위험에 빠뜨림.

c) 피고소인이 평신도인 경우 - 어떠한 고소나 진술서를 채택하기 위한 투표는 단순 다수결 투표를 요구합니다. 위원회가 채택한 고소장 및 진술서는 오(5)일 이내에 피고소인, 고소인, 총리사, 피고소인 개체교회 평신도 지도자, 교회측 변호인, 목회자, 감리사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기소장 및 세부 혐의는 오(5)일 이내에 피고소인, 고소인, 총리사, 피고소인 지역 교회의 교회 협의회 의장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교회를 위한 법률대리인, 목사(들), 그리고 감리사에게 보내져야 한다.

¶ 916. 교단법 적용에 대한 상소.

1. 법률 질문에 대한 상소는 다음과 같이 자동 상소됩니다:

a. 구역회 또는 지방회를 주재하는 감리사의 결정에서 연회를 주재하는 감독에게. 상소가 접수되면, 감독의 결의 사항은 연대상소협의회의로 추가 상소할 수 있습니다;

b. 연회에서 사회하는 감독 또는 총리사의 결정으로부터 연대상소협의회의에; 그리고 c. 총회를 주재하는 감독의 결정은 연대상소협의회의로.

2. 회의 중 서면으로 법률 질문이 제기된다면, 총무는 제기된 질문의 정확한 내용과 의장 판결을 회의록과 연회록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서기는 질문과 판결의 사본을 작성 및 인증하고 상소를 접수한 사람이나 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 916. 법률 질의. Questions of Law may be presented in writing during a regular business session of an annual, district, or charge conference. 사회자는 정식으로 제기된 모든 법률 질의에 대해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법률 질의와 결정은 질의가 제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기가 기록해야 합니다. The secretary shall also transmit the question and decision to the appropriate persons or bodies for review and appeal. 법률 판결은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상소됩니다:

a. 구역회 또는 지방회. 해당 연회에서 사회하는 감독은 구역회나 지방회 회기에서 사회하는 장로목사 또는 연회 회기에서 사회하는 총리사가 내린 모든 법률 판결을 서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대상소협의회의는 해당 결정을 확인, 수정 또는 파기해야 합니다. The decision and review shall not be authoritative, except in the pending case, until it shall have been decided by the Connectional Council on Appeals.

b. 연회 또는 총회. 연대상소협의회의는 연회나 총회 회기에서 사회하는 감독이 내린 모든 법률 판결을 확인, 수정 또는 파기해야 합니다. The decision shall not be authoritative, except in the pending case, until it shall have been decided by the Connectional Council on Appeals.

a. 사역 위원회 조사 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연회 행정 심사 위원회에; 행정 조사 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연회 행정 심사 위원회에;

4. 부적격. 연대상소협의회의 회원은 총회 대의원으로 또는 어떤 경우든 총회 또는 연회위원회, 위원단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연대상소협의회의 회원은 총회 델리게이트, 일반 교회 위원회 또는 위원단의 회원, 또는 총리사로 섬길 자격이 없다. 회원은 제적, 이해 상충 및 ex parte 소통에 관한 ¶ 9XX의 조항에 따라 연회, 지방회 또는 지역 교회의 이사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섬길 수 있다.

5. 공천. 총회 개최 전에 행정공천위원회는 교회의 지리, 인종, 성별 다양성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평신도 및 목회자 범주의 적절한 인원수로 구성된 총 스물한(21)명을 다수결로 공천해야 합니다. 교단총회 첫날에 목회자 또는 평신도의 공천을 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다. 이름, 연회 멤버십, 100자 이내 이력 등은 최소한 선거 사십팔(48) 시간 전에, 총회 대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논의나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공천 및 선거. 연대상소협의회의 회원 및 예비위원의 공천과 선거는 제8부에 규정된 연대 위원회 위원 선거를 위해 약속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법 관행 및 절차. 연대상소협의회의는 교리와 장정의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자체 실무 및 절차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협의회 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가 선출이 포함되며, 이들은 협의회 회원들이 선출합니다. 그러한 실무 및 절차 규칙은 공개되어야 하며 연대상소협의회의 웹사이트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계속 게시되어야 한다.

5. 공개 접근.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연대상소협의회의에 적법하게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적 기록으로 간주되며,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 및 교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연대상소협의회의의 다수결 투표로, 비밀 정보는 공개 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계류 중인 사안에 관한 협의회의의 심의는 비공개이다. 협의회의의 그 밖의

모든 심의 또는 토론은 협의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그러한 회의록은 연대상소협의회 웹사이트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의회는 모든 사안에 대한 구두 변론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 921. 연대상소협의회 회원의 의무와 책임 목적. 연대상소협의회 회원은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교회의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인식된 이해 상충, 편향 또는 부적절성의 외관을 피하여야 한다. 이 정책은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는 모든 항소, 검토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모든 참여를 규율합니다.

외부인과의 연락 및 사전 참여 금지.

섹션 VI - 연대상소협의회 어느 회원도, 위원회에 항소, 확인 판결 요청, 또는 기타 사법 절차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만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자나 단체에게도 조언, 상담 또는 의견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회원도, 공식 절차 외에 어떠한 당사자, 상담자, 연회 임원 또는 기타 관련 인사와도 해당 사안에 관한 토론, 회의, 서신 왕래, 기타 의사소통(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금지는 사안이 접수되거나 접수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때부터 협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재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용된다.

,, 회원이 부주의하게 토론에 참여하거나 나중에 협의회에 회부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받은 경우, 그 회원은 즉시 그 의사소통의 상황과 의사소통의 내용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또는 의장이 해당 회원인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협의회 전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정적 및 개인적 이해 상충. 회원 또는 회원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혹은 회원의 가정에 거주하는 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때 이해 상충이 존재합니다:

해당 사안의 영향을 받는 모든 법인, 계약, 보조금 또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재정적 이해관계(보상, 투자, 소유권 또는 잠재적 이득이나 손실을 포함함), 또는 회원의 객관성을 훼손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그 밖의 개인적, 직업적, 관계적 또는 이전의 관여. 이 경우 회원은 서면으로 해당 이해 상충을 완전히 공개하고, 그 사안에 대한 모든 토론, 심의, 표결에서 스스로를 회피하여야 합니다. 회피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연회 특정 사안. 섹션 VI - 연대상소협의회 회원이 특정 연회의 목회자 회원, 평신도 회원 또는 거주자인 경우, 그 연회만을 특정하고 고유하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징계 조치로 인한 항소, 헌법적 쟁점, 자금 배정 결정, 행정적 검토 등)을 다루는 토론, 심의, 표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은 연회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안, 또는 그 주제가 원 연회를 넘어서는 범위에 적용되는 연회 법률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원은 반드시 회피하여야 하며, 그 회피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공개 의무. 안건에 상정된 사안에 대한 회의나 심의 전에, 각 회원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모든 이해 상충 또는 일방 관여를 지체 없이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회피 및 정족수 절차.

제척은 개별 회원의 일차적 책임이나,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과 관련된 이해 상충 또는 ex parte 관여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의장(부재 시 위원회)은 그 질문에 대해 판결하며, 이 판결은 전체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남은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의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협의회 전체가 그 문제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회피된 회원은 해당 안건에 한해 대체 회원으로 교체됩니다.

비서는 모든 공개, 회피 및 관련 표결에 대해 (적절한 기밀 유지 하에) 공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921 ¶ 922. 관할권.

a. 목회자 회원 또는 현직 감독의 재판에 관한 재판 법원의 모든 결정을 확정, 수정, 환송 또는 파기한다(¶ 915.8).

b. 교회가 상소한 경우, 조사 위원회 또는 재판 법원의 상소된 모든 결정을 확정하거나 새로운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해 환송한다(¶ 915.10).

a. 목회자 회원 또는 현직 감독의 재판에 관한 재판 법원의 상소된 모든 결정을 각하, 확정, 수정, 환송 또는 파기한다(¶ 915.1.h).

b. 교회가 상소한 경우, 조사 위원회 또는 재판 법원의 상소된 모든 결정을 각하, 확정하거나 새로운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해 환송한다(¶ 915.1.i).

¶ 922 ¶ 923. 사건 이송 명령서. 사건 이송 명령서는 다른 기관의 이전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이다. 사건 이송 명령서는 임의 사항이며, 연대상소협의회 위원 3명의 찬성 투표로 부여됩니다. 사건 이송 명령서는 재량 사항이며 연대상소협의회 회원 3명의 찬성 투표로 허가된다.

¶ 923 ¶ 924. 결정. 연대상소협의회 모든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결정은 각 사안의 이해 당사자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하며 공개 검토를 위해 전자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 924 ¶ 925. 이전 판정의 유효성. 감리교회 및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와 같은 전신 감리교 기구의 결정은 연대상소협의회와 변론에서 인용될 수 있지만, 연대상소협의회가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전 판정의 유효성을 갖는다.

법의 주된 원천. 성경과 교리와 장정은 이 제9부에 따라 허가된 모든 사법 및 행정 절차를 위한 법의 주된 원천이다.

¶ 925 ¶ 926. 일정 및 마감일.

¶ 926 ¶ 927. 우리 교단이 그 범위와 회원 모두에서 글로벌임을 인식하여, 이 제9부에 명시된 절차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문화적 차이나 제한 및 극도의 어려움을 입증하는 경우, 연대협의회에 본 절차, 일정, 또는 마감일의 제한적인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각 사안별로만 허용되며, 어느 지역이나 연회에 대한 계속적 변경으로 인정되어선 안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교회법과 정책의 공정한 집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연대상소협의회는 연대 협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상소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집니다. 모든 변칙 신청 및 그에 대한 상소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고소 과정, 모든 일정 및 마감일을 정지시킵니다.

928. “양호한 상태.” 글로벌 메소디스트 교회의 어떤 수준에서든 선출직 또는 임명직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양호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흠이 없어야 하며”, “외부인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가져야 하며”,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2, 7, 8, 11). 교리와 장정의 특정 항은 봉사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누군가가 “양호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재 회원 또는 목회자 지위가 해당 권리 또는 권한의 행사를 허용할 때, 특정 권리, 권한, 직위 또는 봉사에 대하여 양호한 상태에 있다. 그 목적을 위한 양호한 상태는 교리와 장정이 그 사람의 회원 또는 목회자 지위가 적용되는 권리 또는 권한을 수반하지 않거나 이를 제거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때에만 상실된다.

고소의 접수 또는 회부, 정의 결의에 이르지 못함, 조사, 조사 기관의 권고, 혐의의 제기, 재판의 계속 또는 상소의 행사는 그 자체로 양호한 상태의 어떠한 권리 또는 권한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종료하지 않는다. 계류 중인 행정 또는 사법 절차는 교리와 장정이 기초가 되는 회원 또는 목회자 지위 변경을 효력 있게 하고 그 지위에 해당 권리 또는 권한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및 그 범위에서만 양호한 상태의 권리 또는 권한에 영향을 미친다. 상소가 교리와 장정에 따른 지위 변경을 정지시키는 경우, 이전 지위의 권리와 권한은 상소 기간 동안 계속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교리와 장정이 명시적으로 허가한 임시 정지 또는 그 밖의 보호 조치를 금지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조치는 교리와 장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결과만을 가진다.

정의 결의 합의는 그 자체로 양호한 상태의 어떠한 권리 또는 권한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정의 결의는 그 합의가 교리와 장정이 허가한 회원 또는 목회자 지위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교리와 장정이 그 지위의 결과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만 양호한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 710.2.e ¶ 906에 설명된 행정 고소에 대하여, 사역 위원회는 자체 회원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의 평신도 회원을 포함하는 조사 위원회를 파송하여야 한다. ¶ 906에 설명된 행정 고소에 대하여, 사역 위원회는 자체 회원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의 평신도 회원을 포함하는 행정 조사 위원회를 파송하여야 한다.

지역 교회 — 청원 69건

일괄동의안 LC-3A — 지지된 청원

청원 1079 | ¶ 442.4 | 163쪽 대안적 행정 형태를 위한 회원 기준의 명확화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99 | ¶ 456 | 217쪽 연회가 있는 지역에서 지역 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는 절차의 명확화

원안대로 지지: 찬성 49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46 | ¶ 426 | 113쪽 지역이 아닌 환경을 통해 교회에 가입하는 방법의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47 | ¶ 428 | 116쪽 교회 이후 회원 명부, 교회 기록 및 기타 재산의 소재지 명확화

원안대로 지지: 찬성 49 / 반대 0 / 기권 1

청원 1149 | ¶ 431 | 122쪽 대학생 보고 요건을 지역 교회 또는 ... 참석 권고로 대체

수정안대로 지지: 찬성 47 / 반대 3 / 기권 0

개정:

지역 교회의 회원이 학교, 대학 또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다른 지역 사회로 이동하는 경우, 목사/목회자는 해당 회원이 인근 글로벌 감리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학교 인근 지역에 글로벌 감리교회가 없는 경우,

목회자는 하여야 할 수 있다 학생이 참여할 적합한 교회 또는 학원 선교를 찾도록 돕는다.

청원 1151 | ¶ 434 | 128쪽 다른 교단으로 전입하는 절차 간소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64 | ¶ 438.9 | 139쪽 교회 총회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65 | ¶ 440 | 150쪽 지역 교회 지도자 임기의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개정:

¶ 440. 지도자 선출. 구역회나 교인 총회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 고백교인으로 개체교회에서 봉사할 지도자를 단순 다수결로 선출한다. 담임 또는 교회 총회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도자를 단순 다수결 투표로 선출합니다.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여성, 남성, 청소년, 청년, 65세 이상, 장애인, 다양한 인종, 민족 또는 부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한 주의는 여성, 남성, 청소년, 젊은 성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또는 부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포용에 기울여야 한다. 개체 교회 임원직은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

청원 1166 | ¶ 441 | 152쪽 지역 교회 지도자 임기의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개정:

구역회에서 선출된 지도자나 임원이 그러한 지도자나 임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지방감리사(PE)는 특별 구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회의의 목적은 "임원의 해임 및 공석을 채울 임원의 선출을 위한 심의"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천 및 리더십 개발 위원회 또는 그 책임을 맡은 다른 그룹은 특별 구역회가 발표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회의를 열고 구역회에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선출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안해야 한다

구역회를 준비하면서,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 또는 그 책임을 맡은 다른 단체는 구역회에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선출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안하여야 한다.

준비하면서, 구역회를 위해,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 또는 그 책임을 맡은 다른 단체는, 구역회에서 모든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위하여 사람(들)을 제안하여야 한다.

구역회가 한 사람을 해임하기로 투표하는 경우, 공석은 선거에 규정된 방식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개체교회 재단 이사의 해임을 고려 중이고 목회 책임이 두 개 이상의 교회로 구성된 경우, 구역회 대신 개체교회 총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개체교회 재단 이사의 해임이 고려되고 사목 책임이 두 개 이상의 교회로 구성된 경우에는 구역회 대신 지역 구역 또는 교회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청원 1176 | ¶ 450 | 207쪽 새 교회 조직 요건의 명확화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8 / 반대 0 / 기권 0

개정:

1. 글로벌 감리교회 지역 교회 또는 교회 그룹의 후원을 받아, 글로벌 감리교회의 평신도나 성직자 누구나 새로운 지역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후원하는 지역 교회 또는 교회 그룹은 본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집니다. 후원하는 지역 교회 또는 교회 그룹은 교회 개척에 대한 책임감을 제공하여야 한다. 후원하는 개체교회 또는 그룹을 이룬 교회들이 없는 경우, 연회는 지정된 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개체교회 개척을 승인하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청원 1178 | ¶ 452 | 208쪽 지역 교회의 폐쇄

원안대로 지지: 찬성 48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79 | ¶ 452.2 | 210쪽 협동 본당 설립의 명확화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8 / 반대 0 / 기권 0

개정:

2. 감리사회는 그들의 사역 환경에 맞게 협동 본당을 조직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 수 있다.

2. 감리사회는 그들의 사역 환경에 맞게 협동 본당을 위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조직하기 위한을 만들 수 있다.

청원 1181 | ¶ 456 | 218쪽 교회들이 GMC에 가입하는 절차의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9 / 반대 0 / 기권 0

개정:

¶ 456. 글로벌 감리교회와 정렬하는 기독교 교회들. 1. 기독교 회중은 적법하게 소집된 회중 모임에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중의 고백 교인들의 다수결 투표를 통해, 이 교리와 장정에 있는 교리적 기준과 사회적 증언(¶ 101-108; 301-302)을 지지하고 글로벌 감리교회와 연결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열망을 표명함으로써 글로벌 감리교회와 연대할 수 있다. 교회 협의회는 그 결정을 지역 교회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연회의 연대 협의회(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교회 협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구)는 그 결정을 지역 교회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연회의 연대 협의회(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요청이 승인되기 전, 연회 연대 협의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는 지역 교회가 사용한 과정의 적법성과 교회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정렬의 효력 발생일은 연회 연대 협의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 의해 정해집니다.

청원 1199 | ¶ 409 | 92쪽 사목 책임의 정의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개정:

이 청원은 ¶ 409.1 ¶ 409.2 및 ¶ 409.3을 개정한다 ¶ 409. 목회적 책임의 정의. 1. 사목 책임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 아래 조직되고 그에 복종하는 하나 이상의 교회 원, 구역회가 있으며 목사가 섬기도록 파송되거나 배정된 교회들로 구성된다.

2. 두 개 이상의 교회에 대한 목회 책임은 순회 또는 협력 교구로 지정될 수 있다.

3. 안수 또는 인가를 받은 목사가 목회적 책임을 맡을 수 없는 경우, 감독은 감리사회(cabinet)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갖추고 훈련받은 평신도를 배치하여 해당 책임의 사역을 맡길 수 있다. 평신도는 책임을 맡는 지방 감리사(PE)나 그 직무를 감독하도록 파송된 다른 안수 받은 목사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 맡은 이들은 성찬 사역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배정이 1년보다 더 오래 계속된다면, 그 평신도는 연회 사역 위원회의 돌봄 아래 사역을 위한 인증 후보자가 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또한 배정된 평신도는 배정된 연회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사목 책임을 임명된 성직자가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감독은 감리사회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갖추고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연회 사역 위원회에서 정의한 자)를 해당 사목 책임에 사역하도록 총당할 수 있습니다. 배정된 평신도 사역자는 감리사 또는 감리사가 지정하여 사목 책임을 감독하고 성례 사역을 위한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 장로목사에게 책임을 진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는 즉사 사역 인증 후보자 과정에 들어가도록 격려되어야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사역 인증 후보자 과정에 돌입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한 사목 책임에 배정될 수 없습니다. 그 배정된 평신도 사역자는 배정된 연회의 정책과 절차에 책임을 진다.

2. 사목 책임이 안수받은 또는 인허받은 목회자에 의해 섬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감독은 자격을 갖추고 훈련받은 평신도를 감리사의 감독 아래 섬기도록 배정할 수 있으며, 감리사는 성례 사역을 위한 조항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다. 평신도는 연회의 정책에 따라 사역을 위한 적절한 훈련과 계발을 추구하도록 권장됩니다.

청원 1200 | ¶ 439.2 | 141쪽 구역회의 멤버십과 의무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01 | ¶ 439.4 | 142쪽 구역회를 위한 비서 선출

원안대로 지지: 찬성 49 / 반대 0 / 기권 1

청원 1203 | ¶ 439.5 | 144쪽 교회 위원회 멤버십에 대한 구역회의 권한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개정:

5. 각 구역에서 교회의 모든 부문이 대표되는 포용성 있는 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권장한다. 각 구역은 모든 위원회, 협의회, 사명/위원회, 위원회, 태스크 포스의 구성에서 교회 회중의 모든 계층이 대표되도록 포용성을 갖추어야 함을 권장합니다. 각 사목 책임은 회중의 모든 부문이 대표되도록 모든 공식 행정 기구 이사회, 협의회, 위원단, 위원회 및 태스크 포스의 구성에 포용성을 갖추도록 권장된다.

6. 구역회는 교리와 장정이 특정한 제한을 정하지 않는 한, 지역 교회의 선출되거나 파송된 임원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연속 재임 기간에 제한을 정할 수 있다. 구역회는 교리와 장정에 그 직책에 대해 명시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 교회의 선출되거나 파송된 임원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연속 재임 기간에 제한을 정할 수 있다. 어떤 임원도 같은 직책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청원 1204 | ¶ 439.7 | 145쪽 후보자 과정에서 구역회의 책임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개정:

7. 구역회는 이 교리와 장정의 조항을 충실히 준수하여, 최소 1년 동안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회의 양호한 상태의 교백 교인이었고,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 및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그들을 후보자로 명백히 확증하며, 교육 요건을 충족한 안수 사역 후보자를 심사하고 사역 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구역회는 ¶ 505 및 ¶ 506.1의 요건을 충족하는 안수 사역 후보자를 심사하고 사역 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구역회는 교리와 장정의 조항에 따라 안수 사역 후보자를 심사하고 사역 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사람이 안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교회의 믿음과 증거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개체교회는 의도적으로 안수 사역을 위한 후보자를 육성하고, 영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사역을 위한 섬기는 지도자로 교육하고 양성해야 한다.

청원 1205 | ¶ 439.10 | 147쪽 구역회에서의 보고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06 | ¶ 439.11 | 148쪽 목회자 보상을 정하는 구역회의 권한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09 | ¶ 445.1 | 175쪽 PPRC의 멤버십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10 | ¶ 445.5 | 177쪽 PPRC 회의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9 / 반대 0 / 기권 0

개정:

6. 위원회는 최소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최소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감독, 감리사, 담임 목사, 기타 위원회 책임자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위원회는 감독, **총리사**, 감리사, 담임 목사, 위원회에 책임을 지는 다른 사람 또는 위원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회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위원회는 담임 목사의 인지하에서만 회의해야 한다. 목사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사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각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담임 목사는 위원회의 각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동안 해야 하며, 그 또는 그녀가 목사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사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원회는 검토 중인 파송된 목회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사와 회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 중인 파송된 목회자는 지방감리사(PE)와의 만남 전에 통보를 받고 그 직후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최소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감독, 감리사, 목사, 위원회에 책임을 지는 다른 사람 또는 위원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회의해야 한다. 담임 목사 이외에, 위원회에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담임 목사 이외에, 모든 사람은 위원회에 책임을 지는 경우 언제든지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는 담임 목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 총리사**, 감리사 또는 그들의 지정인과 회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 대상이 되는 목사/목회자는 해당 회의 전에 반드시 통보를 받아야 하며, 그 직후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만나야 하며 위원회에서 공유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청원 1211 | ¶ 445.8 | 179쪽 PPRC의 의무 명확화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6 / 반대 0 / 기권 1

개정:

목사(들)와 직원들이 효과적인 사역을 증진하고 계속 교육의 필요와 계획을 파악하도록 사용하기 위해 적어도 매년 평가를 제공한다. 목사(들)와 직원들의 사역 효과성을 증진하고 계속 교육의 필요와 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연례 평가를 제공한다. 목사(들)와 직원들의 사역 효과성을 증진하고 계속 교육 및 개발의 필요와 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연례 평가를 제공한다. 목사(들)에 대한 평가는 완료 시 감리사와 공유되어야 한다.

담임목사와 협력하는 부목사 및 기타 직원들을 위한 서면 업무분장 및 직함을 개발하고 승인한다. 담임 목사와 협력하여 부담임 목사 및 기타 직원들의 서면 직무 기술서와 직함을 개발하고 승인한다. 부목사라는 용어는 담임 목사 이외의 개체교회에서 목회 파송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위원회는 부목사를 위해 업무분장과 기대치를 반영하는 특정 직함을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

담임목사 및/또는 기타 임명된 직원과 상의하여 담임목사의 변경으로 인해 책임자 및/또는 담임목사에게 최선의 이익이 제공된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담임목사 및/또는 다른 직원과 상의한다. 위원회는 목회자(들), 지방감리사(PE), 감독과 협력하여 목회자의 파송을 책임져야 한다. 감리사 및 감독과의 관계는 자문 역할에 한합니다(¶ 610.7). 위원회는 관련 목사(들)와 먼저 우려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목사(들)의 변경을 감리사 또는 감독에게 추천해서는 안 된다. 목사(들)의 변경이 사목 책임 및/또는 목사(들)의 최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명백해질 경우, 담임 목사 및/또는 부담임 목사(들)와 협의한다. 위원회는 목사/목회자들, 감리사, 총리사, 그리고 감독과 협력하여 목회 리더십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감리사, 총리사, 감독과의 관계는 협의적(consultative) 성격을 갖습니다(¶ 610.7). 위원회는 해당 목회자와 먼저 우려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목회자 교체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 변경을 요청하기 전에, 위원회는 관련 목사와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그러한 우려 사항의 서면 요약물 목사나 감리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목회자 변경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회 구성원 중 적어도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원 1212 | ¶ 446.1 | 187쪽 재단 이사회의 멤버십과 목적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8 / 반대 0 / 기권 0

개정:

재단 이사가 지역 교회의 멤버십에서 탈퇴하거나 그로부터 제거된 경우, 그 재단 이사직은 해당 탈퇴 또는 제거된 날로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지역 교회의 고백 교인이기를 그만둔 재단 이사는 자동으로 재단 이사로 섬기는 것을 그만둔다. 지역 교회의 재단 이사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없거나, 구역회의 지시에 따라 교회 자산에 대한 법적 문서를 적절히 집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역회는 다수결 투표로 해당 이사의 재단 이사회 멤버십이 결원임을 선언하고, 다수결 투표로 교회 회원 중에서 잔여 임기를 채울 회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탈퇴 또는 제거로 인한 결원이 아닌, 임시로 발생한 공석은 교회 협의회에서 다음 구역회까지 임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청원 1298 | ¶ 442.3 | 162쪽 교회 협의회 의장의 임기 제한 설정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5 / 반대 0 / 기권 0

개정:

3. 교회 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구역회에서 선출한다. 교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 의장은 연속적으로 6년을 초과하여 선출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이 끝나면 최소 1년간 담당자 직을 비워야 다시 교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습니다. 의장은 자신이 섬기게 될 지역 교회에서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교회 협의회 또는 운영 이사회 의장은 연속하여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구역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교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 의장은 연속적으로 6년을 초과하여 선출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이 끝나면 최소 1년간 담당자 직을 비워야 다시 교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습니다. 의장은 그가 섬기게 될 지역 교회의 글로벌 감리교회 고백 교인이어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가진다:

청원 1303 | ¶ 442.2 | 160페이지 연회 평신도 대표의 회원 자격 기간 삭제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1 / 반대 4 / 기권 0

청원 1341 | ¶ 453.3 | 213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연대 책임 간소화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6 / 반대 2 / 기권 0

청원 1363 | ¶ 401 | 81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방법론적 및 설명적 언어 삭제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개정: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전도, 예배, 설교, 가르침, 성례 실천, 자비의 행위, 독실함의 행위,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 그 일에 참여합니다.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일이지만, 우리의 과업은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 예배, 설교, 가르침, 성례전, 자비사역, 경건 사역, 교제를 통해 그 일에 동참한다.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일이지만, 우리의 과업은 마태복음 28:18-20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청원 1365 | ¶ 402 | 83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역사적 및 서술적 언어 삭제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50 / 반대 1 / 기권 0

개정:

존 웨슬리는 1739년 6월 11일 자신의 저널에서 다음과 같이 유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여긴다. 존 웨슬리는 1739년 6월 11일 자신의 저널에서 다음과 같이 유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여긴다. 그러므로, ; 즉 지금까지 내가 뜻하는 바는, 내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듣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으며 나의 마땅한 의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감리교인들은 우리 교회의 사명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전 세계에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임을 인식해 왔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전 지구세계에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우리보다 먼저 온 감리교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늘 우리 사명은 이 풍성한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이 풍성한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청원 1371 | ¶ 442.2 | 161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연회 대표성 간소화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84 | ¶ 432 | 125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회원 자격 이전 및 목회적 감독 간소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개정:

지역 교회의 회원이 자신이 속한 교회의 예배와 생활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지역 사회에 거주할 경우, 그 회원은 그 지역 사회의 글로벌 감리교회로 회원 자격을 이전하도록 권면받아야 한다. 목회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역 회중과 연결되도록 돕고 적절한 목회적 감독을 보장해야 한다. 소속 교회의 목회자는 또한 회원의 새 지역 사회에 있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목회자 또는 감리사에게 그 회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목회적 감독을 요청하여 통지해야 한다. 글로벌 감리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목회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역 회중과 연결되도록 도와야 한다.

청원 1386 | ¶ 430 | 121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회원 보고 간소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87 | ¶ 429.6 | 120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공동 회중에서의 보고 간소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95 | ¶ 424 | 110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협동 회원 및 준 회원 간소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개정:

지역 교회는 연회의 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 사회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협동 회원 또는 준 회원 자격을 둘 수 있습니다.

협동 회원 및 준 회원. 지역 교회는 다음과 같이 협동 또는 준 회원 자격을 둘 수 있다:

1. 협동 회원.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 또는 글로벌 감리교회와 공식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감리교 관련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신의 소속 교회를 떠나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의 협동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주 회원 자격은 소속 교회에 남아 있으며, 그 교회에는 협동 회원 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준 회원. 다른 기독교 교단의 회원으로서 자신의 소속 교회를 떠나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의 준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주 회원 자격은 소속 교회와 교단에 남아 있다.

3. 참여. 협동 회원 및 준 회원은 지역 교회의 교제, 목회적 돌봄 및 사역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 교회는 그들이 지역 교회 지도력에서 섬기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연회의 평신도 회원으로 섬길 수는 없다. 그들은 협동 또는 준 회원 자격을 보유한 지역 교회의 고백 교인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4. 기간. 협동 또는 준 회원 자격은 해당 회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계속되며, 회원의 요청 또는 지역 교회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일괄동의안 LC-3B — 부결된 청원

청원 1080 | ¶ 445 | 174페이지 목회자 변경을 위한 서면 진술 및 표결 요구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8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45 | ¶ 425 | 111페이지 구성교인 명부의 정의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50 | ¶ 432 | 124페이지 이사하는 회원을 위한 절차 명확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67 | ¶ 442 | 153페이지 지역 교회 지도자들의 의무 명확화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2 / 반대 3 / 기권 0

청원 1246 | ¶ 445.8 | 182페이지 목회 협력 위원회 의무 명확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8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99 | ¶ 409.3 | 94페이지 구역 사역을 수행하는 것보다 촉진하는 것에 대한 명확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01 | ¶ 445.8 | 184페이지 지역 교회 목회자 평가에 관한 SPRC/감리사 협력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8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04 | ¶ 455.2 | 216페이지 감독 참여에 관한 유연성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9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44 | ¶ 453.1 | 211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에큐메니컬 회중 정의 간소화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4 / 반대 4 / 기권 0

청원 1359 | ¶ 401 | 79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비전 성명서 언어 명확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60 | ¶ 445.6 | 178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위원회 회의 요구 사항 간소화

다음 안을 채택하여 부결: 찬성 49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62 | ¶ 445.1 | 176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목회 협력 관계 구조 간소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64 | ¶ 401 | 82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역사적 및 비지시적 언어 삭제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50 / 반대 1 / 기권 0

청원 1373 | ¶ 402 | 84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글로벌 교회 정체성 명확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74 | ¶ 440 | 151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교회 지도자 선출 간소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76 | ¶ 402 | 85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열망적 및 설명적 언어 삭제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77 | ¶ 439.7 | 146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후보자 추천 절차 명확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78 | ¶ 408 | 87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지역 교회 정의 간소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79 | ¶ 439.4 | 143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구역회 기록 보존 간소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80 | ¶ 409.1-2 | 93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사목 책임의 구조 명확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83 | ¶ 433 | 126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교회 간 회원 자격 이전 간소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85 | ¶ 431 | 123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집행 불가능한 보고 조항 삭제

다음 안을 채택하여 부결: 찬성 46 / 반대 3 / 기권 1

청원 1388 | ¶ 429 | 118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중복된 명부 목록 삭제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89 | ¶ 409.3 | 95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평신도 숙제 및 개발 명확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90 | ¶ 429.1 | 119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회원 기록 요구 사항 간소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91 | ¶ 428 | 117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중단된 지역 교회로부터의 이전 간소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92 | ¶ 427 | 115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회중 환경 밖에서의 회원 접수 간소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9 / 반대 1 / 기권 0

청원 1393 | ¶ 426 | 114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비지역 교회 환경에서의 회원 자격 간소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94 | ¶ 425 | 112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규정적인 구성교인 명부 요구 사항 삭제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9 / 반대 1 / 기권 0

청원 1416 | ¶ 438.9 | 140페이지 구역회 권한 및 전 교회 표결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138 | ¶ 409 | 88페이지 모든 교회를 위한 장로목사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96 | ¶ 442.1 | 158페이지 지역 교회 평신도 지도자의 임기 제한 설정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35 / 반대 11 / 기권 0

청원 1342 | ¶ 453.2 | 212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에큐메니컬 회중을 위한 언약 요구 사항 간소화

개정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1 / 반대 7 / 기권 0

개정:

에큐메니컬 회중을 형성하는 교회는 감리사와의 협의 하에 그들의 공동 사역을 규율하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에큐메니컬 회중을 형성하는 회중들은 그들의 공동 사역을 규율하는 서면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의하여 감리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원 1345 | ¶ 452.1 | 209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유연성: 협동 본당 구조 간소화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2 / 반대 5 / 기권 0

개정:

협동 본당은 둘 이상의 회중 간의 공동 사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감리사가 감독의 승인과 지역 교회들의 동의를 얻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협동 본당은 목회 지도력을 공유하고 선교와 사역에 협력하기로 동의한 두 개 이상의 지역 교회로 구성된다. 목회자와 직원은 통합된 사역 팀으로 섬겨야 한다. 각 지역 교회는 그 교회 협의회를 유지해야 한다. 참여하는 구역회들은 필요에 따라 공동 협의회, 위원회 또는 기타 방식을 둘 수 있다. 감리사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 관련 구역회들의 동의로 협동 본당을 구성할 수 있다.

청원 1361 | ¶ 401 | 80페이지 글로벌 연합, 지역 명확성: 중복된 신학적 진술 삭제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0 / 반대 5 / 기권 0

개정: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사명의 확장이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의 연장이다. 모든 연령과 신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필요로 한다.

사역 — 20건의 청원

일괄동의안 MIN-3A — 지지된 청원

청원 1033 | ¶ 521 | 307페이지 모든 목회자를 위한 구역회 연결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55 / 반대 4 / 기권 2

개정:

각 목회자는 자신이 연결된 구역회에 자신의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 1083 | ¶ 512 | 287쪽 본처 전도사에서 교구 목회자로 명칭 변경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6 / 반대 0 / 기권 0

개정:

2. "모든 신자의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인정하고,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은혜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전도사가 글로벌감리교회의 성례전의 신학과 실행에 관한 연회 목회위원회의 훈련을 이수한 후, 감리사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 다른 장로목사의 지도 아래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다. 감리사는 적절한 경우 전도사 후보생 멘토를 이 역할에 배정할 수 있다. 안수위원회는 감리교 전통 내에서 성례전 신학에서 수강한 모든 과목을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이라는 성경적 원칙을 인정하고, 우리 모든 교회 내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은혜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감리사는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성례의 신학과 실천에 관한 연회 안수위원회의 훈련을 성실히 이수한 교구 목사에게 성례 집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이라는 성경적 원칙을 인정하고,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은혜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감독은 글로벌 감리교회에서의 성례의 신학과 실천에 관하여 연회 사역위원회가 실시하는 훈련을 만족스럽게 이수한 교구 목회자에게 성례 집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사역 위원회는 또한 승인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감리교 전통 안의 성례 신학에 관하여 이수한 모든 과목을 그 훈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성례전 권한은 감리사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 다른 장로목사의 감독과 권한 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교구 목사의 파송된 사역 환경으로 한정됩니다.

청원 1112 | ¶ 506 | 254쪽 후보자 과정 및 사역 진입 절차의 명확성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9 / 반대 1 / 기권 0

개정:

1. 안수 사역에 대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개체교회 목사 또는 지방감리사(PE)와 만나 후보 자격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최소 2년간 멤버십을 유지했어야 하며, 중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들은 최소 1년 동안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 회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하며 중등학교 졸업장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들은 최소 1년 동안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 회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한다. 각 연회의 사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 많은 연수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중등학교 졸업장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리적 지역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신학교에 재학 중인 안수 사역에로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은 가입하기를 원하는 연회의 감리사 또는 사역 위원회 의장(또는 그 지정인)과 만나야 한다. 그들은 개체 교회의 교인으로서 최소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하며, 대학 또는 신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캠퍼스/채플 사역에 최소 1년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한다. 그들은 글로벌 감리교회와의 신학적 일치를 입증하고 감리사, 사역 위원회 의장(또는 그 지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이 항에 명시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역 추천 후보자로 고려되기 위해 사역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다른 교단에서 후보자 여정을 시작한 잠재적 후보자는 사역 위원회에 이 후보자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이전 작업 일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a. 문의 후보자 - 문의 후보자는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안수 사역에로의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 후보자는 지역 목회자 및 감리사에게 연락하여 ¶ 506의 과정과 요구 사항을 상의해야 합니다.

b. 추천 후보자 - 추천 후보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i. 목회-교구 관계 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면접을 받고 3분의 2 비밀 투표로 추천을 받을 것.

iii. 지역 교회 또는 연회가 계약한 신원 및 신용 조회를 완료할 것; 미국 외 지역에서는 신원 및 신용 조회를 사역 위원회가 결정한다. 지역 교회 또는 연회가 계약한 신원 및 신용 조회를 완료할 것. 신원 및/또는 신용 조회를 이용할 수 없는 모든 연회의 경우, 평가는 사역 위원회가 결정한다.

ii. 연회가 위탁한 심리 평가를 받아야 하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안수 위원회가 평가 방식을 결정합니다. 연회가 계약한 심리 평가를 받을 것. 심리 평가를 이용할 수 없는 모든 연회의 경우, 평가는 사역 위원회가 결정한다.

청원 1413 | ¶ 509 | 276쪽 언약적 연대: 집사목사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57 / 반대 0 / 기권 3

개정:

4. 집사목사는 감독에 의해 개체교회(목사 포함) 또는 다른 사역 환경에서 사역 팀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파송되거나 감독의 승인과 파송을 받아 독자적인 직분을 확보할 수 있다. 집사목사는 감독에 의해 지역 교회에서의 사역팀의 일원으로(목회자로서 포함) 또는 다른 사역 환경에서 섬기도록 파송될 수 있으며, 또는 감독의 승인과 파송을 받아 자신의 직위를 확보할 수 있다.

집사목사는 지역 교회의 사역팀의 일원으로 섬기도록 감독에 의해 파송될 수 있으며, 지역 교회를 감독하도록 파송된 장로목사에게 순종합니다. 이 파송은 지역 회중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사역 현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장로목사 안수에 대한 소명을 고려하거나, 감독 또는 감리사에 의해 장로목사 사역에 대한 은사와 은혜가 인정된 집사목사는, 파송된 목사로서 또는 지도 감리사나 감리사의 감독을 통해, 파송된 장로목사의 섬기는 영적 리더십 아래 지역 교회의 목사직에 파송될 수 있습니다. 장로목사로 안수받도록 부르심을 고려하는 집사목사, 또는 감독이나 감리사가 장로목사 사역을 위한 은사와 은혜를 인정한 집사목사는, 파송된 장로목사의 섬기는 영적 지도 아래 지역 교회에서 목회자의 직분에 파송될 수 있으며, 파송 목회자로서 또는 감독 감리사나 감리사의 감독을 통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 감리사.

e. 전적으로 면제된 과목.

청원 1415 | ¶ 510 | 280쪽 언약적 연대: 장로목사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61 / 반대 0 / 기권 1

개정:

장로목사는 소속 연회 사역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언약적 책임을 계속 유지하는 한, 연회의 정회원 목회자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 완전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집니다. 장로목사는 감독에 의해 감리사로, 담임 목회자로서 지역 사역에, 지역 교회의 직원으로, 파송된 집사목사, 본처 전도사 또는 배정된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있는 다른 지역 회중을 맡은 장로목사로, 체플린으로, 전도자로, 또는 다른 사역 환경에 파송될 수 있다. 장로목사는 감독에 의해 감리사로, 담임 목회자로서 지역 사역에, 지역 교회의 직원으로, 파송된 집사목사, 본처 전도사 또는 배정된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있는 다른 지역 회중을 맡은 장로목사로, 체플린으로, 전도자로, 또는 다른 사역 환경에 파송될 수 있다. 장로목사는 감독 직책에 선출될 자격이 있다.

¶ 608. 선출 및 배치. 정회원 장로목사로서 언약적 친교 안에 살고 있는 자는 총리사의 추천에 따라 감독에 의해 감리사로서 지방(또는 그에 준하는 단위)을 이끌도록 파송될 수 있다. 지방감리사는 매년 효율성 평가를 거쳐 임명된다. 지방감리사는 통산 12년을 초과하여 시무할 수 없으며, 연회 연대 협회의(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에서 매년 연장하고 총감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감리사(PE)를 선출할 때 감독과 총감리사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포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406).

¶ 613. 명예 감독의 지위

3. 명예 감독은 언약적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연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연회의 목회자 회원이 되며 선임 목회자에게 허용된 모든 직책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520).

¶ 908. 사법 고소

1. 고소 가능 위반 행위 — 연회의 감독이나 목회자 회원(선임 목회자 및 명예 또는 행정 처분에 있는 목회자 포함)은 다음 위반 행위 중 하나 이상으로 기소될 때(아래에 명시된 공소사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글로벌 감리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한 불순종;

f. 언약적 교제를 저버리는 행위 (¶ 505 & ¶ 506)

(추후 번호 재지정)

[한 문단 보류됨: FINAL은 이 지점에 공동 서명자 사본 페이지 바닥글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파일 아티팩트이며 위원회의 조치의 일부가 아니다.]

일괄동의안 MIN-3B — 부결된 청원

청원 1001 | ¶ 502.2 | 229쪽 공인 평신도 사역자 - 승인된 훈련의 명확성

다음을 위해 부결됨: 찬성 54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03 | ¶ 506 | 252쪽 안수 사역 진입의 전통적 및 대안적 경로

다음을 위해 부결됨: 찬성 5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08 | ¶ 505.8 | 250쪽 동성애 안수에 반대하는 성명서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09 | ¶ 505.9 | 251쪽 트랜스젠더 사람들의 안수에 대한 반대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22 | ¶ 505.2 | 249쪽 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안수 기준 명확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95 | ¶ 506.1 | 257쪽 다른 교단 출신 전환 목회자에게 유연성 제공

다음을 위해 부결됨: 찬성 5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97 | ¶ 502.2 | 230쪽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 과목 요건 명확화

다음에 의해 부결됨: 찬성 54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37 | ¶ 502.2 | 231쪽 공인 평신도 사역자 신원 조회

다음에 의해 부결됨: 찬성 54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38 | ¶ 502.2 | 232쪽 공인 평신도 사역자 자격

다음에 의해 부결됨: 찬성 54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39 | ¶ 502.1 | 228쪽 공인 평신도 사역자 업무 영역

다음에 의해 부결됨: 찬성 54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43 | ¶ 502.2 | 233쪽 공인 평신도 사역자 양성 및 자격 증명의 지역 관리

다음에 의해 부결됨: 찬성 54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60 | ¶ 506.1 | 258쪽 감리사 또는 총리사에 의한 안수 후보자 공천 허용

다음에 의해 부결됨: 찬성 56 / 반대 0 / 기권 0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096 | ¶ 502 | 220쪽 / ¶ 405 공인 평신도 사역자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57 / 반대 0 / 기권 0

개정:

¶ 405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

¶ 502. 공인 평신도 사역자.

1. 공인 평신도 사역자(CLM)는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기 위해 특별 훈련을 받은 지역 회중의 고백 교인이다.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공인 평신도 사역자는 개체교회에 의해 세워지며, 목회자, 목회 협력 위원회 및 구역회의 격려를 받아 이 길을 걷도록 권면받습니다.

2. 자격.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최소 1년 동안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 회중(또는 그 전신)의 고백 교인. 최소 1년 동안 지역 글로벌 감리교회 회중(또는 그 전신)의 고백 교인.

b)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단이 승인한 기준을 충족하는 연회가 개발한 평신도 사역을 위한 역량 강화 경로의 만족스러운 이수. 글로벌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은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단은 제자를 세우고, 건전한 교리를 갖추며, 유능한 사역 실천을 보여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서 인도하기에 충분한 교육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한다.

c) 전국 신원 조회. (해당되는 경우 지역 동등 조회).

d) 목회자의 서면 추천 및 목회-교구 관계 위원회와 구역회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에 의한 지지.

e) 연회 사역위원회의 면접 및 승인. 해당 인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합니다.

3. 인증 갱신. 평신도 사역을 위한 자격 증명은 다음에 근거하여 연회 사역위원회가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a) 해당 연도 동안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지를 개요로 설명하는 구역회와 연회 사역위원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b) 매년 구역회의 다수결 투표에 의한 지지.

c) 목회자의 갱신을 위한 서면 추천.

d) 3년마다 추가 전국 신원 조회의 완료(해당되는 경우 지역 동등 조회).

e) 연회 사역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른 지속 훈련의 만족스러운 이수.

4.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자기 개체교회를 넘어 수행하는 사역. 평신도로서 공인 평신도 사역자는 연회 사역위원회의 관할을 받는다. 감독에 의해 파송되는 이는 목회자뿐이지만,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는 자신의 지역 교회 밖의 사역 직무에서 배정을 받아 섬기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 자격 증명의 이전: 이주 시,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는 새 연회의 연회 사역위원회에 자신의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 자격 증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 502.2에 따라 사역 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연회에서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인정되는 CLM 프로그램의 양성 과정을 통해 만족스럽게 자격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갱신 과목이 요구되지 않는 한 추가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받아서 안 된다.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프로그램에서 인증받은 사람들은 사역 위원회의

기대를 만족스럽게 충족하기 위해 연회 사역위원회로부터 추가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그 새로운 연회에서의 모든 후속 CLM 자격 증명 갱신은 ¶ 502.3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6. 목회자의 전환. CLM으로 인증받은 사람이 후에 안수 사역에로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경우, 연회 사역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안수 후보 과정의 일부 또는 모든 단계에 대한 동등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청원 1412 | ¶ 505 | 245페이지 **언약적 연대: 목회자**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2 / 반대 8 / 기권 4

개정:

8. 지역 교회의 언약적 친교에 충실함을 보여주고, 목회자들 간의 강화된 언약적 친교 기준에 기꺼이 순종하는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9.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신설) ¶ 506. 목회자 언약 친교. 이 목회자 언약적 교제는 연회 사역위원회가 정의하며, 최소한 다음에 대한 상황적 이해를 포함해야 한다: 이 목회자 언약적 교제는 연회 사역위원회가 정의하며, 다음에 대한 상황적 이해를 포함할 수 있다:

1. 기록된 구역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매년 서로에게 보고합니다.

2. 최소 6년마다 한 번씩 이 언약적 삶을 함께 살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동료 심사를 받음.

3. 웨슬리안 반과 밴드를 통하여 서로 언약적 책임감 안에서 살아가는 것.

3. 서로 언약적 책임감 안에서 살아가는 것 웨슬리안 반과 밴드를 통하여.

4. 우리의 은사, 재능, 자원을 사용하여 연회 사역을 강화함으로써 언약 친교의 신실한 회원으로 생활합니다.

5. 우리 가운데 있는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가 무너지거나 실패할 때 적절한 정책, 절차, 훈련 및 언약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국가 또는 지역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어떠한 직무로 섬기는 모든 목회자는 전문직 책임 및 비행에 대한 보험 보장 패키지에 가입해야 한다. 각 목회자는 매년 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적절한 정책, 절차, 훈련 및 언약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정책과 절차가 무너지거나 실패할 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국가 또는 지역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어떠한 직무로 섬기는 모든 목회자는 전문직 책임 및 비행에 대한 보험 보장 패키지에 가입해야 한다. 각 목회자는 매년 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책임성을 위해 최소한 매년 영적 지도력에 순종합니다(감독, 총리사, 감리사, 감독 장로목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교리와 장정에 정의된 영적 지도력에 책임감을 위해 적어도 매년 복종하는 것 (감독, 총리사, 감리사 및 감독 장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7. 영적 성장을 위한 정기적인 기회와 연례 계속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직분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훈련과 학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후 번호 재지정)

교리와 장정을 이 제안된 변경 사항에 더욱 부합시키기 위해, 명확성과 일관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이 필요합니다.

¶ 517. 다른 교단으로부터 전입한 목회자 파송

1. 안수 위원회의 추천과 연회 목회자 실무회의의 승인에 따라 감독은 신분이 양호한 다른 기독교 교단 소속의 목회자를 교단 소속을 유지한 채 임직 또는 초교파적 사역을 하도록 파송할 수 있다. 그들은 연회 사역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언약적 교제에 대한 책임감을 계속 유지하는 한 유효한 집사목사 또는 유효한 장로목사로 파송되어야 한다.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면서 다른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목회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안수 위원회가 준비한 신청서에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하라: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사역에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

필요한 모든 심리 검사, 범죄 경력 및 신용 조회, 성추행 또는 아동 학대 보고서에 대한 공개 및 허가.

후보자가 증범죄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거나 성추행이나 아동 학대로 서면 고발된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된 진술서, 또는 증범죄나 경범죄 유죄 판결이나 성추행이나 아동 학대에 대한 서면 고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공증된 진술서.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를 가르치고, 지지하며,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진술서.

사역 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교리와 장정을 읽었으며, 글로벌 감리교회의 권징과 정체를 지지하고 유지할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다른 기독교 교단 출신 안수받은 목회자로서 적합한 자격 증명을 제시하고, 글로벌 감리교회의 집사목사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교육을 완료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글로벌 감리교회가 요구하는 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목회자는 임시로 파송될 수 있으며, 임직 시작 후 3년 이내에 집사목사로서의 모든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요건 완료에 대한 진행 상황은 매년 표시되어야 한다.

2. 유효한 집사목사 또는 유효한 장로목사로 확인된 목회자는 연회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다음의 사안에서는 제외된다.

유효한 집사목사 또는 유효한 장로목사로 인정받은 목회자는 연회 사역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연약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계속 유지하는 한, 다음 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해 연회에서 투표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

총회 또는 연회 델리게이트 선거; 그리고 목회자의 안수 품성 및 연회 관계에 관한 모든 사안. 유효한 집사목사와 유효한 장로목사는 연회의 모든 이사회, 위원단 또는 위원회(사역 이사회 및 재단 이사회 제외)에서 봉사할 수 있다. 유효한 집사목사/유효한 집사목사와 유효한 장로는 총회나 연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3. 연회 회기 사이에, 연회의 다음 정기 목회자 회기에서 승인될 때까지 안수 위원회는 그러한 사람의 파송을 승인할 수 있다. 감독은 사역위원회에서 승인한 사람에 대해 임시 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 원징 및 정체를 지지하고 유지하려는 그 사람의 이해, 수용 및 의지에 대해 사전 심사와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개인은 감독으로부터 파송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연회 사역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연약 친교에 순종하고 책임감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908. 사법 고소

1. 고소 가능 위반 행위—연회의 감독이나 목회자 회원(선임 목회자 및 명예 또는 행정 처분에 있는 목회자 포함)은 다음 위반 행위 중 하나 이상으로 기소될 때(아래에 명시된 공소시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글로벌 감리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한 불순종;

f. 연약 친교를 저버리는 행위 (¶ 505 & ¶ 506).

(추후 번호 재지정)

청원 1459 | ¶ 514 | 291페이지 평신도 및 목회자 전도자의 정제된 자격 요건 및 목회자 전도자의 파송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54 / 반대 0 / 기권 0

개정:

¶ 514-515 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현재 및 장차 임할 왕국에 대한 복음을 말과 행함과 표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곧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개하고 믿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전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며 새 을 경험하도록 이끈다(마가복음 1:15; 누가복음 24:19-32; 사도행전 2:22-47; 로마서 10:9;

요한복음 3:3-8).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전도자로서 특별히 기쁨 부음과 은사를 받은 이들을 부르셔서 교회에 주십니다 (엡 4:11-13). 이 평신도와 목회자들은 8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이 전도하여 9 복음의 확산을 가속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모든 신자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로 성화되고 형성되기 위해 지역 교회에 연결될 필요가 있다 10 (마태복음 4:19, 16:13-19, 28:18-20; 사도행전 8:4-40, 21:8; 에베소서 4:11-13). 11 1. 평신도 및 목회자 전도자의 자격 요건 글로벌 감리교회는 평신도 전도자와 목회자 전도자 모두를 인정하고 기념한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전도자들은 지역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도록 독특한 은사를 받았다. 전도자는 개체 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도 사역에 대한 팀 접근 방식을 통해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양육되어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전도자로서의 지지를 위한 절차 A. 전도자로서 지지를 구하는 사람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1년 동안 글로벌 감리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그들은 총칙에 부합하는 영적 규율의 실천과 성결의 양식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수용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B. 전도자로서 사역에로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음 요구 사항을 완료해야 한다 1. 다음 질문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면접을 위해 직원/교구 관계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만날 것:

a) 그리스도께로의 회심;

b) 전도자 사역에로의 부르심;

c)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합니까?

d) 그들의 삶은 어디에서 열매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도록 은사를 주셨음을 보여 주니까?

2. 지역 교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그 사람은 a) 직원/교구 관계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교회/구역회에 2/3 비밀 투표로 추천해야 한다.

b) 자신의 지역 교회/구역회가 다수결 투표로 지지해야 하며 c) 연회 전도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평신도 전도자로서의 지속적 지지 A. 지지받은 전도자는 완료한 모든 계속 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사역 보고서를 자신의 교회/구역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집사목사와 장로목사의 전도자로서의 파송 A.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로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도자는 ¶ 610.10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전도자로 파송될 수 있다.

B. 지역 교회의 사역 외부 및 그 너머의 직위에 전도자로 파송된 목회자는 매년 연회 목회자 회의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증언 — 청원 22건

일괄동의안 SW-3A — 지지된 청원

청원 1020 | ¶ 302.7 | 66페이지 기독교 결혼과 성적 거룩함에 관한 교회의 교리 명확화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35 / 반대 1 / 기권 0

개정:

7. 우리는 결혼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인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상호 사랑, 신실함 및 지지의 평생 언약으로 의도되었음을 확인한다 **(창세기 1:27-28; 2:18-24; 마태복음 19:4-6; 에베소서 5:31-32)**. 성적 행위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혼인 언약 안에만 속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형태의 인간 성은 성경 및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창세기 1:27-28; 2:18-24; 마태복음 19:4-6; 에베소서 5:31-32).

청원 1111 | ¶ 302.3 | 56페이지 태아와 어머니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언어 제공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8 / 반대 0 / 기권 0

개정:

이 청원은 ¶ 804.3을 개정한다 3. 우리는 발달 수준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 생명은 신성하다고 믿는다.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낙태의 관행에 저항하도록 한다.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낙태의 관행에 저항하도록 한다. 단, 어머니와 아이의 안녕이 위태로운 생명 대 생명의 비극적 충돌의 경우에는, 아기를 별도의 환자로 돌보면서 조산이 필요할 수 있다. 어머니 또는 아이의 사망 위험이 위태로운 생명 대 생명의 비극적 충돌의 경우에는, 아기를 별도의 환자로 돌보면서 조산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는 낙태를 산아 제한이나 성별 선택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생명의 주님의 제자들인 모든 기독교인에게 적절한 돌봄, 상담 또는 자원 없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의 제자들인 모든 기독교인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봄, 상담 및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거나 원치 않는 임신에 직면한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창세기 1:27, 창세기 9:5-7, 22:22-23; 출애굽기 22:22-23, 시편 139:13-16; 야고보서 1:27.)** (출애굽기 22:22-23; 시편 139:13-16; 야고보서 1:27).

청원 1125 | ¶ 302.4 | 61페이지 조력 자살 반대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3 / 반대 0 / 기권 0

개정:

우리가 낙태의 관행에 저항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한 비자발적 또는 자발성 없는 안락사도 거부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완화적으로 MAID, 즉 의사 조력 사망(PAD), 그리고 그 하위 범주인 의료인(의사) 조력 자살(PAS)이라고 불리는 관행을 통한 인간 생명의 고의적 종결을 거부한다. 우리는 발달 수준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 생명은 신성하다고 믿으므로, 어떤 사람에 대한 안락사를 반대한다. 이는 회복의 희망이 없고 임박한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로부터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자연사로 끝나도록 허용하는 대신 직접적으로 또는 그들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종결하는 관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회복에 대한 의학적 기대가 없고 임박한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에게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자연사로 끝나도록 허용하는 대신 직접적으로 또는 그들의 자살을 조력하여 생명을 종결하는 관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창세기 1:26-27, 욥기 12:10, 시편 139:13-16, 고린도전서 6:19-20).**

청원 1127 | ¶ 302.8 | 70쪽 성과 성 정체성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36 / 반대 3 / 기권 0

개정:

우리는 타인을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대상화하거나, 비하하려는 모든 성적 행위를 죄로 인정합니다. 그러한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간음, 소아성애**, 음란물, 일부다처제, 난잡함, 성노예제. 이러한 행위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폄화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각 남성과 여성에게 의미 있는 정체성을 가진 독립된 인간으로서 총만함과 번영을 누리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하신 것을 훼손합니다. 성적 행위의 올바른 표현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결혼(¶ 302.7)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성(sex)이 있음을 단언합니다. 우리는 드물게 나타나는 인터섹스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모호함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상태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규범적 범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혼란한 상태이며, 모든 질병이나 장애와 마찬가지로, 그 경우에도 그 사람은 혼란한 상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 나아가, 성인이 수술 및/또는 약물로 자신의 이차 성징을 변경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미성년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신체적 아동 학대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아동의 신성한 가치를 확인하며, 미성년자가 사회적, 의학적 또는 수술적 전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을 바꾸려 하도록 장려하거나 돕는 관행, 정책 또는 개입에 반대한다.

청원 1307 | ¶ 302.4 | 63쪽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한 명확화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37 / 반대 0 / 기권 0

개정: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에 의한 힘든 노동이나 착취가 없는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고된 노동이나 타인의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한다. 우리는 근로자가 임금과 복지제도를 고용주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자유롭게 따르도록 허락되기를 기도한다. 특히 진리와 지식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과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의도된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상호 증언으로서 믿음과 과학 사이의 대화를 격려한다 (**신명기 5:12-14; 누가복음 10:7; 고린도전서 10:31; 디모데전서 5:18**)-(창세기 2:15; 신명기 5:12-14; 누가복음 10:7; 골로새서 3:17; 디모데전서 5:18).

청원 1308 | ¶ 302.5 | 64쪽 빈곤의 원인이라는 비난 삭제

원안으로 지지: 찬성 39 / 반대 0 / 기권 0

일괄동의안 SW-3B — 거부된 청원

청원 1006 | ¶ 302.7 | 65쪽 인간의 성과 결혼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38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07 | ¶ 302.8 | 68쪽 불경한 형태의 성적 행위 및 성별 정체성의 표현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38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21 | ¶ 302.8 | 69쪽 기독교 결혼과 성적 거룩함에 관한 교회의 교리 명확화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38 / 반대 0 / 기권 1

청원 1044 | ¶ 302.3 | 55쪽 교리와 장정 제302.3항 개정을 위한 청원.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37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38 | ¶ 302.3 | 57쪽 낙태에 대한 명확한 생명 존중 입장 채택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37 / 반대 0 / 기권 1

청원 1258 | ¶ 302.4 | 62쪽 태아 - 인식, 교육 및 행동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37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05 | ¶ 302.3 | 58쪽 장애인의 신성한 가치 확인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37 / 반대 0 / 기권 1

청원 1306 | ¶ 302.3 | 59쪽 산아 제한 수단으로서의 우생학 규탄 포함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37 / 반대 0 / 기권 1

청원 1448 | ¶ 302.3 | 60쪽 낙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교회가 항상 반대해야 한다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37 / 반대 0 / 기권 1

청원 1457 | ¶ 302.9 | 72쪽 성과 성별에서의 성경적 인간론과 성화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0 / 반대 0 / 기권 1

청원 1467 | ¶ 302.7 | 67쪽 거룩한 결혼의 기념

다음을 채택하여 부결됨: 찬성 3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68 | ¶ 302.8 | 71쪽 거룩한 결혼의 기념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4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72 | ¶ 302.7 | 보충자료 2쪽 더 충실한 결혼 신학을 위한 청원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35 / 반대 2 / 기권 1

청원 1473 | ¶ 302.8 | 보충자료 3쪽 성적 죄에 관한 구체성을 위한 청원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36 / 반대 0 / 기권 2

청원 1474 | ¶ 302.9 | 보충자료 4쪽 성적 죄에 관한 책임감을 위한 청원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35 / 반대 1 / 기권 1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466 73쪽 결의안 글로벌 감리교회의 인종 신학

수정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29 / 반대 12 / 기권 0

개정:

글로벌 감리교회는 집단적으로 세속적인 인종의 틀을 거부할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계급, 문화, 국적, 지리가 모든 사람의 완전한 포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하지만, 사랑받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를 측정하는 유효하거나 유용한 척도로서 인종 할당제와 계량 지표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속적인 차이, 특히 인종에 근거하여 교회의 일부를 서로 분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거부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종에 대한 세속적이고 자본배적인 신마르크스주의적 이해를 거부합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의 차별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반인종주의의 틀을 거부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로 결의한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교회에 들어와 섬기는 모든 사람이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고 자기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는 조건 하에, 교단 내 모든 수준의 사역에 모든 민족 집단을 보편적으로 포용하는 성경적 생활 방식을 지지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다른 신실한 언약의 동반자들보다 우리 자신의 내집단을 계속해서 선호하는 단체가 되지 않기로 결의해야 합니다. 타인을 등용하는 데 있어 실력이나 은사보다 친분 관계에 반복적으로 의존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명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부는 생활 방식으로 습관적으로 다른 민족, 계급, 문화, 국적의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자신의 세속적인 정체성을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락한 터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세속적 구성물에 힘을 실어주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언젠가 주위를 둘러보며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단체들은 이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성취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연령, 민족, 국가의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녔음을 확언하기로 결의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7).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 정체성은 세속적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연합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사람들을 주로 인종이나 계층에 따라 분리하고, 집단 갈등을 인간관계의 근본으로 만들거나, 지상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이데올로기와 체계를 거부한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교회의 신실함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인종 할당제와 메트릭스를 거부하며, 인종 분리, 편견, 차별 및 억압에 반대한다.

대신 우리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하나님 아래에서 화해와 정의를 추구하는 성경적 사회 이해를 확언한다. GMC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교회 안의 교제로 이끌기를 열망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세속적 분열을 넘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연합된 모든 민족과 나라로부터 하나의 교회를 이루실 것을 신뢰할 것이다.

일괄동의안 SUP-3A — 지지된 청원

청원 1014 | ¶ 608 | 333쪽 감리사의 역할과 범위 명확화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1 / 반대 0 / 기권 1

개정:

¶ 608. 선출 및 배치. 정회원 장로목사는 총리사의 추천으로 감독에 의해 지방(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이끄는 감리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감리사는 효과성 평가 후 매년 파송되며, 통상적으로 지구(또는 그에 상응하는 단위) 내 목회자와 교회, 회중의 사역을 지원하는 목회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역할은 연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목회 파송 또는 다른 책임에 더하여 수행되는 겸직 소명 직위이다. 감리사는 지구(또는 그에 상응하는 단위) 내 목회자와 교회, 회중의 사역을 지원하는 목회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역할은 연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목회 파송 또는 다른 책임에 더하여 수행되는 겸직 소명 직위이다. 지방감리사는 통산 12년을 초과하여 시무할 수 없으며, 연회 연대 협회의(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에서 매년 연장하고 총감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사의 선정 및 파송 시 감독들과 총리사들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포용성 및 글로벌하고 연대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06). 감리사의 선정 및 파송 시 감독들과 총리사들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포용성 및 글로벌하고 연대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06). 감리사의 책임, 권한의 범위 및 섬김의 형태는 교회의 교리, 규율 및 사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가운데 연회(또는 그에 상응하는 단위)의 문화적, 선교적, 조직적 및 상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리사의 책임 수행을 돕기 위하여, 각 연회는 연회 평신도 지도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이 이끄는 평신도 지도력 구조를 격려하고 지원하여 연회 전반의 평신도 지도력을 강화하고 갖추게 하여야 한다.

청원 1035 | ¶ 610.10 | 356쪽 기관목회를 연결 상태로 유지하기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3 / 반대 0 / 기권 0

개정:

총리사와 감리사회의 추천에 따라 감독들은 사역 위원회가 그 사역 환경을 승인한 후 지역 교회 밖의 기관목회에 승인받은 목회자 집사목사와 장로목사를 파송할 수 있다. 총리사와 감리사회의 추천에 따라, 감독들은 사역 위원회가 그 사역 환경을 승인한 후 지역 교회 밖의 기관목회에 승인받은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다. 파송은 교회의 사명에 따라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안수 사역의 본질을 반영해야 합니다(¶ 401).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지역 교회를 넘어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에게 상담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현역 목회자로 남으며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감리사가 배정되어야 한다.

청원 1051 | ¶ 603.5 | 313쪽 총회와 연회 주제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0 / 반대 0 / 기권 1

청원 1078 | ¶ 605.4 | 327쪽 600년대 향의 오래된 참조를 삭제하는 청원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22 | ¶ 610.9 | 354쪽 임시 파송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47 | ¶ 610.7 | 353쪽 상담 파송 과정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1 / 반대 2 / 기권 1

개정:

7. 상담은 지속적인 과정인 동시에 파송 변경 기간에 이루어지는 더욱 집중적인 관여이다. 가능한 경우, 교회에는 잠재적 목회 면접을 위해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두세 명의 목회 후보자가 제공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감리사회의 재량에 따라 교회에는 잠재적 목회 면접을 위해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한 명 이상의 목회 후보자가 제공될 수 있다. 교회는 감리사에게 잠재적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다. 목회 협력 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은 감리사에게 잠재적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다. 교회와 목회자는 악의 없이 제안된 파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교회와 목회자는 악의 없이 제안된 파송을 거절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최종 면접은 고려 중인 목회자(들), 감리사, 그리고 총리사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일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청원 1335 | ¶ 610.5 | 346쪽 공개 순회를 위한 책임감

원안으로 지지: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33 | ¶ 612 | 361쪽 공석의 가능한 이유 추가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36 | ¶ 613 | 362쪽 재판 법원에 의해 면직된 사람들의 명예 은퇴 지위 삭제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38 | ¶ 614 | 363쪽 휴직에서 불필요한 중복 삭제

원안으로 지지: 찬성 39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39 | ¶ 615 | 364쪽 불만 제기 정보를 제9절에 적절히 배치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0 / 반대 0 / 기권 0

일괄동의안 SUP-3B — 거부된 청원

청원 1024 | ¶ 610.7 | 347쪽 파송 결정 과정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40 / 반대 0 / 기권 1

청원 1034 | ¶ 605 | 323쪽 투표 비율 단순화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4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76 | ¶ 604.8 | 320쪽 600번째 문단의 오래된 참조 삭제 청원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4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84 | ¶ 608 | 334쪽 감사사의 연례 평가 명확화

다음에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38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98 | ¶ 604.5 | 319쪽 감독 선출에 최소 75%의 지지가 요구됨을 명시하도록 문단 604.5 개정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2 / 반대 1 / 기권 0

청원 1221 | ¶ 610.7 | 351쪽 파송 시행 명확화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0 / 반대 0 / 기권 2

청원 1223 | ¶ 610.10 | 357쪽 확장 사역 파송 명확화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3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60 | ¶ 604.1 | 316쪽 감독 공천의 성격 변경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7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61 | ¶ 604.3 | 318쪽 감독 1인당 연회의 수 축소 ¶ 604.3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63 | ¶ 604.8 | 321쪽 총회 주기와 감독 임기 단축 ¶ 208 제VII조 및 ¶ 604.8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3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92 | ¶ 604.1 | 317쪽 AEC 회원 선출을 연회에서 투표하도록 함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2 / 반대 0 / 기권 1

청원 1336 | ¶ 604.8 | 322쪽 감독 선거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3 / 반대 0 / 기권 0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285 | ¶ 610 | 341쪽 총리사가 파송을 확정하도록 허락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3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51 | ¶ 604 | 314쪽 감독의 선거 및 파송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5 / 반대 0 / 기권 0

개정:

¶ 604.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정기 총회 개회 90일 전까지 모든 감독권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재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고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감독들의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에는 각 사람이 성직자 회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연회를 명시해야 합니다.”

¶ 604.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총회 개회 후 90일 이내에,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선출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전원 회의체는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독 수에 따라 감독 지역을 정하기 위해 소집되어야 하며, 각 지역은 6개에서 8개의 연회로 구성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합니다. 글로벌 감독 위원회 의장이 회장이 된다.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전원 회의체에 제안된 감독 지역을 추천하며, 가능할 경우 그 구성에 있어 인접한 회의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독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며 국제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각 추천된 감독 지역은 국제적인 구성이어야 하며, 적어도 하나의 연회가 다른 연회들과 다른 대륙에 위치해야 합니다. 추천된 어떤 감독 지역도 특정 국가에 위치한 모든 연회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추천 감독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연회들의 상대적인 재정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각 제안된 감독 지역에 다양한 재정 능력을 가진 연회들이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현직 감독과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회원은 투표권 없이 발언권을 가지고 본회의 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감독 지역에 대한 계획은 지역 감독직 위원회 전원 회의의 단순 다수결 투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감독 지역 조정 계획은 총회에 앞서 총회가 모일 때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 604.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개별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소집하여 자체 지도부를 선출하고, 원하는 대로 감독 후보자들과 면접을 실시해야 합니다. 각 개별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면접 후보자 명단에 해당 감독 지역의 연회에서 성직자 회원이었거나, 또는 이전 화폐 단위 내에서 이 지역 경계 안에서 봉사한 재선 대상 후보자나 감독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지역 감독 위원회는 감독 지역과 글로벌 감리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력에 가장 부합하는 최대 5명의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 순위가 매겨진 명단에는 현직 감독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현직 감독이 감독 지역 내 연회의 성직자 회원이 아니었거나 현재 회원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지역 감독 위원회는 글로벌 감독 위원회가 공개한 관련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동일한 후보가 두 개 이상의 지역 감독 위원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후보인 경우, 글로벌 감독 위원회는 투표 절차에 앞서 총회 대의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 604.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독들은 총회 전체에 의해 각 정해진 감독 구역에 선출되어야 한다. 단, 어떠한 개인도 본인이 목회자 회원이었거나 현재 목회자 회원으로 속한 연회가 있는 정해진 감독 구역의 감독으로 선출될 수 없다. ” 대의원은 동일한 투표용지에 두 개 이상의 감독구에 대해 동일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없다. 한 감독 지역의 감독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퍼센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 후보가 동일한 투표용지에서 둘 이상의 감독 지역에 대한 최고 선택일 경우,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다음 투표용지 배부 전에 델리게이트들에게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 604.5에 대한 이 개정은 채택 즉시 효력을 가진다.] ¶ 604. 감독 선거. 다음 조항들은 글로벌 감리교회에서의 감독 선거를 안내한다:

1. 적법하게 선출된 연회 대표단은 자기 연회 출신 목회자 최대 1명을 감독직에 공천할 수 있으며, 자기 연회 외부 출신 목회자 최대 1명을 감독직에 공천할 수 있다. 이 공천에는 현직 감독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공천은 정기적으로 예정된 총회 개회 180일 전까지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재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각 감독은 정기적으로 예정된 총회 개회 180일 전까지 재선 출마 의사를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총회 개회 회기 120일 전까지 감독직의 모든 후보자 및 재선에 출마할 자격과 의사가 있는 감독을 포함한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공표한다. 각 후보자는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뒷받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총회 개회 회기 120일 이내에,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선출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본회의 기구는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가 정한 감독 수에 근거하여 감독 지역을 정하기 위해 소집되며, 각 지역은 6개에서 8개의 연회로 구성하는 것을 지침으로 한다.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협의 과정을 통해 본회의 기구에 감독 지역 정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글로벌 감독 위원회 의장이 회장이 된다. 감독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가 없으며 구성상 국제적이어야 한다. 현직 감독과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회원은 투표권 없이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감독 지역 계획은 지역 감독직 위원회 본회의 모임의 단순 다수결로 승인된다.

4. 개별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소집되어 자체 지도부를 선출하고, 관련 기밀 문서를 포함하여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가 제공한 후보자 자료를 검토하며, 원하는 대로 감독직 후보자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주님께서 누구를 감독직으로 부르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한다.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기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분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각 대표단으로부터 의견과 분별을 구한다. 각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지도력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감독 지역 총수와 동등한 수의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 이 명단들은 총회 최소 30일 전에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가 총회 델리게이트들과 공유한다.

5. 감독은 총회 전체 회의체에 의해 선출된다. 감독을 선출하려면 적어도 60%의 지지가 요구된다.

6. 감독직에 선출된 자들은 역사적 방식에 따라 총회에서 성별된다.

7. 감독의 실제 임기는 총회 폐회 후 두 번째 완전한 달의 첫째 날에 시작하며,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총회가 폐회한 후, 그러나 감독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역 감독직 위원회들은 회합하여 새로 선출된 각 감독과 면담한다. 각 감독과 면담한 후, 지역 감독직 위원회들은 자기 감독 지역을 섬길 감독에 대한 최우선 선택 3명의 기밀 순위

명단을 작성한다.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순위 명단을 받고, 그 순위를 지침으로 사용하여 감독들을 감독 지역에 파송한다.

8. 감독은 최대 두 번의 6년 임기를 섬길 수 있다. 다만 2026년 총회 전에 감독직을 섬겼고 2026년 총회에서 선출된 자들은 추가 임기를 섬길 자격이 없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ይህ ገጽ ሆኖ ተቀላቅ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